경제현안분석 제86호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북유럽 국가의 금융 · 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조은영

2014. 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현안분석 제86호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총 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홍형선 조세분석심의관
김대철 재정정책분석과장

작 성 | 조은영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 | 김정선 (前)재정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엄상미 재정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은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02) 788-3777 | dolkongs@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확대, 2016년을 기점으로 15~64세 근로가능인구의 감소, 통일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남유럽의 재정위기 중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과 경제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북유럽 국가가 2008년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1990년대 초 발생했던 금융·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과 R&D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위기기간 동안 급증했던 국가채무 수준을 줄여 나갔습니다. 특히, 1960~19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했던 복지지출을 연금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의 확대, 성과중심으로 교육체계의 개편,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대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난 영향과 이후의 정책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부디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지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요 약

Ⅰ.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

○ 1997 ~ 2007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7%인데 반해, 2008 ~ 2012년 동안 연평균 2.9%로 1.8%p 감소하였고 국가채무는 1997년에 GDP 대비 11.9%에서 연평균 1.5%p씩 증가하여 2012년에 34.8%에 이름

– 그 중에서도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1997년에 21.9%에서 2012년에 45.1%로 증가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복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 저출산·고령화 및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 2016년을 정점으로 15~64세 인구의 감소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통일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이런 측면에서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보편적 복지체계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북유럽 국가의 특징

❑ 북유럽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 협의체계, 소규모 개방경제, 보편적 복지체계, 사회전반에 걸친 높은 신뢰수준과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짐

○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 협의체계는 중용이라는 전통적 가치, 1930년대 초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급간의 연대, 비례대표 선거제도 등의 영향을 받음

- 시민의 조직화와 정치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점진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노사관계가 격화된 19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
- 1930년대 사회민주당과 농민당 간의 적록(Red-Green)동맹, 비례대표 선거제로 인한 연합정권의 형성,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노조 조직률과 중앙집권화 등은 조합주의 정책수립에 영향

○ 북유럽 국가의 GDP 규모는 우리나라의 1/3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이는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일찍부터 수출 주도의 개방경제를 지향한 것에 주로 기인

- 북유럽 국가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1970년에 24.0~36.7%로 16%대의 프랑스·독일·이탈리아보다 높았으며 점차 비중이 증가하여 2012년에 39.7 ~ 54.5%에 이름

○ 민간을 중심으로 빈곤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유형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조세를 기반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 국민부담률이 2011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43.2~48.1%에 이름
-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출이 200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4.1~5.0%, 가족분야의 복지지출은 3.2~3.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0.5~1.6%로, OECD 평균 보다 높음

○ 북유럽 국가의 부패정도는 매우 낮은데, 이는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에 기인

- 국제투명성(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구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같은 투명성 메커니즘의 운영, 언론의 자유, 낮은 소득불평등도, 오랜 역사를 지닌 옴부즈맨 제도 등의 영향

Ⅲ. 1990년대 초반 금융 및 재정위기에 따른 정책

❑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에서 발생한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는 198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형성, 1990년 독일 통일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럽통화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환투기세력의 공세에 기인

- ○ 금융자유화 이후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거품 형성
- ○ 1990년 독일 통일 후 동독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
  - – 유럽통화시스템(European Monetary System: EMS)의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회원국 통화의 실질이자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침체를 초래
- ○ 한편, 유럽통화통합(EMU)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평가되어 있던 통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한 환투기 세력이 고평가된 유럽 통화를 대규모로 매도
  - – 1991년 유럽통화통합(EMU) 창설을 위한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회원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환율, 정부부채, 장기금리에 대한 조건이 제시됨
  - – 이는 독일 통일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재정정책에 제한을 주어 마스트리트 조약에 대한 국가별 비준 가능성을 낮춤
  - – 1992년 6월 덴마크에서 유럽통화통합(EMU)에 대한 조약 비준이 부결되면서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고 환투기 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국가들의 통화가 평가절하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대규모로 매도
  - – 유럽통화통합 회원국이 되길 희망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투기적 매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율방어를 실시하였으나 외환보유고만 소진한 채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자국 통화에 대한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

❑ 북유럽 국가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세수감소, 복지지출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

- ○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에 -6.0%, 스웨덴은 1993년에 -2.1%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 실업률의 경우 덴마크는 1987년 5.0%에서 1993년 9.6%로, 핀란드는 1991년 6.6%에서 1994년 16.6%로, 노르웨이는 1989년 4.9%에서 1993년 6.0%로, 스웨덴은 1988년 1.8%에서 1994년 9.4%로 증가

○ 복지지출의 경우 덴마크가 1987년 GDP 대비 23.8%에서 1994년 29.4%로, 핀란드는 1987년 23.5%에서 1992년 33.2%로, 노르웨이는 1987년 20.9%에서 1992년 24.2%로, 스웨덴은 1987년 29.6%에서 1993년 35.7%로 증가

○ 재정수지의 경우 덴마크가 1993년에 GDP 대비 -3.9%, 핀란드가 1993년에 -8.2%, 1992년에 노르웨이가 -1.9%, 스웨덴이 1993년에 -11.2%의 적자를 기록

❑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는 은행권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하였으며 통화정책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전환

○ 스웨덴 정부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의 부실자산처리 전담회사와 한시적 금융위기 관리전담기구인 은행지원청(Bank Support Authority)을 설립하였으며 예금보험제도를 도입

–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규모는 GDP 대비 4.5%임

○ 핀란드의 중앙은행은 3개의 부실자산처리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및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예금보험기구인 정부보증기금과 금융감독청을 설립

–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규모는 GDP 대비 15%임

○ 노르웨이는 예금보험제도로 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정부은행보험 및 투자기금을 설립하고 부실 대형은행을 국유화하였으며 예탁금리 인하 등을 단행

–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규모는 1988 ~ 1990년에 GDP 대비 4%, 1991 ~ 1992년에 GDP 대비 2.6%임

○ 스웨덴은 통화정책 목표를 1991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 ± 1%p'로, 핀란드는 1993년에 '근원인플레이션의 2%'로, 노르웨이는 2001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5%이내'로 설정

○ 핀란드와 스웨덴은 외환유출이 급증하자 1992년 9월과 11월에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고 1999년 1월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하자 핀란드 통화를 마르카(markka)에서 유로(euro)로 전환

❑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후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세원 확충 및 복지지출 삭감,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

○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준칙과 다년도 예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통제하고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감시

○ 사회복지지출 중 비중이 큰 연금과 관대한 실업급여 등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감축

- 스웨덴은 1996년에 실업급여의 정부보전율을 90%에서 75%로 낮추고 1998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구조에서 연금가입자의 소득 및 예상수명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
- 핀란드는 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였고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민간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실업보험료율을 인상하고 1995년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각 20%, 6%씩 감축
- 덴마크는 최저 과세소득한도를 인상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고 환경세를 인상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취업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유연한 노동시장, 탄탄한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황금삼각형모델'을 정립
- 노르웨이는 1997년 실업보험의 수령자격을 강화하고 수령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퇴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의학적 사유로 한정

○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

- 스웨덴 정부는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신·우편·철도·석유·항공 등 주요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35개 기업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
- 핀란드는 1988년부터 자본확충, 자본시장의 활성화, 외국자본의 유치, 정부부채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
- 덴마크는 1993년부터 우체국은행 GiroBankd의 분할차입을 시작으로 항공·통신·철도회사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민영화

- 노르웨이도 1986~2003년까지 전력·통신·은행·운송 등 일부 공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

○ 그 결과,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와 실업급여의 개혁 등으로 복지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개선에 긍정적 영향

- 2007년 복지지출이 1990년에 비해 스웨덴이 GDP 대비 2.9%p, 노르웨이가 1.8%p 감소하였고, 노동시장 정책을 대폭 개혁했던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만 2.3%p 감소
- 1990년대 후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국가채무의 경우 덴마크가 1993년에 GDP 대비 92.4%에서 2007년 34.3%로, 핀란드가 1996년에 66.2%에서 2007년에 41.4%로, 스웨덴이 1997년에 83.0%에서 2007년에 49.8%로 감소

❑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첨단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지역 중심의 연구 집적단지인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였으며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가속화, 지식산업의 도래, EU의 경쟁력 강화규정 등으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나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워짐

○ 1981년 R&D 투자비중은 스웨덴을 제외하고 OECD 평균(GDP 대비 1.9%) 미만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GDP 대비 1.6%인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덴마크가 2.6%, 핀란드가 3.5%, 스웨덴이 3.4%로, OECD 평균인 GDP 대비 2.4%를 상회

○ 1990년대 이후 기술교육기관의 전문화와 성과주의 교육예산방식의 도입 등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1991년 대비 2007년에 덴마크 82.1%, 핀란드 90.2%, 노르웨이 66.1%, 스웨덴 38.9% 증가

○ 북유럽 국가들은 전문성 강화, 효율성 제고, 경쟁우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생산자 · 고객· 경쟁자들 간에 집적단지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성장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해당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 1990년대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원 조직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핀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벤처캐피탈기관인 시트라(Sitra)와 산업투자 유한회사(Industry Investment Ltd.)를 설립
- 스웨덴은 자금·기술·경영에 대해 조언하는 NUTEK의 SIC(Stiftelsen Innovation Centrum)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기술기반 기업과 벤처 캐피탈을 연계하는 투자 포럼을 매년 개최

○ 이와 같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속적인 R&D 투자 및 인적자원 확충에 대한 노력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핀란드와 스웨덴의 1985~1990년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ultifactor productivity)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4%, 0.3%에서 1995~2000년에 2.7%, 1.6%로 증가
- 1985~199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덴마크 1.5%, 핀란드 3.4%, 노르웨이 1.7%, 스웨덴이 2.4%에서 1995~2000년에 덴마크 2.9%, 핀란드 4.8%, 노르웨이 3.7%, 스웨덴이 3.5%로 증가

Ⅳ.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추이

❑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의 부실로 발생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럽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유럽의 경기침체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촉발하였으며 북유럽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 미국발 금융위기는 덴마크를 제외하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금융권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예금지급보증 한도를 늘리거나 은행의 유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

- 핀란드는 예금지급보증 한도를 최소 25,000유로에서 50,000유로로 인상하였고 약 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과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 스웨덴은 2008년 10월에 1.5조 크로나(약 2,000억 달러)의 금융권 지원 대책을 발표

-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2009년에 1.25%까지 낮춤
-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일부 덴마크 은행의 부실화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택시장마저 침체되자 덴마크 정부는 5단계에 걸쳐 금융구제방안을 마련

○ 유럽의 경기침체가 북유럽 국가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 대비 2009년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가 악화

- 경제성장률은 덴마크가 GDP 대비 -4.9%p, 핀란드가 -8.8%p, 노르웨이가 -1.7%p, 스웨덴이 -4.2%p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덴마크가 2.6%p, 핀란드 2.0%p, 노르웨이 0.6%p, 스웨덴이 2.2%p 증가
- 재정수지는 덴마크가 GDP 대비 6.1%p, 핀란드가 7.0%p, 노르웨이가 8.3%p, 스웨덴이 3.2%p 감소하였고 국가채무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덴마크가 7.9%p, 핀란드가 11.5%p, 스웨덴이 2.2%p 증가

○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 핀란드는 2009년 1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인하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국책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확대 등 2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자 2010년에 재정지출을 확대
- 스웨덴은 2009 ~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13년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 취업률 제고, 금융체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 5대 개혁 분야에 35억 달러를 편성
- 노르웨이는 2009년에 non-oil GDP의 3%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2008년 이후 노령연금의 적자로 재정부담이 증가하자 2011년에 연금개혁을 단행
- 덴마크는 2009년과 2012년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2013년에 2020년까지 최소 경제성장률 2% 달성과 15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성장계획(Growth Plan)을 발표

○ 2009 ~ 201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GDP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영향으로 2010년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회복

- 그러나 연이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2~2013년 동안 노르웨이를 제외한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임

○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기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북유럽 국가간 기술협력을 강화

- 덴마크 정부는 과거 R&D 투자가 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성 하에 2020년까지 혁신기업, R&D 민간투자, 대졸자의 비중을 OECD 상위 5위권 이내로 높이고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2배로 늘린다는 계획 하에 27개 정책을 포함한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발표
- 핀란드는 기존 R&D 지원체계를 통해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주요 혁신기관인 핀베라(Finnvera), 핀프로(Pinpro), 테케스(Tekes) 등을 혁신의 중심인 오타니에미로 이전시켜 긴밀한 협력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
- 스웨덴은 2012년 9월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R&D 투자 확대, 성장 및 고용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중기 R&D 투자 계획을 발표
-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닌 북유럽 국가들은 2005년에 설립된 과학기술협력 전담기구를 통해 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건강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R&D 투자 효과를 배가

Ⅴ. 요약 및 시사점

❑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재정개혁과 경제성장률 제고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무준칙 등 새로운 재정준칙의 법제화 검토 필요

-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감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음

- 이에 1990년대 이후 재정준칙 등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방적 조치가 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나 OECD 국가들 중 빠른 고령화 속도, 통일과 같은 잠재적 위기 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재정여력의 확보가 필요

○ 둘째, 북유럽 국가의 1960~1980년대 과도한 복지제도 확충이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복지지출 삭감으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확충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고려가 필요

- 고령화, 높은 국민부담률, 세계화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연금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지출의 삭감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연금지출 증가율을 크게 둔화시켰고 덴마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실업급여 지출을 감소시킴
- 한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용보조금,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를 통해 경기침체기에 인적자원의 손실이 최소화됨으로써 성장의 밑거름이 됨

○ 셋째,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기업의 성과와 효율성 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공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 확대의 제한, 민간자본의 유치의 제약,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북유럽 국가는 민영화의 대상을 시장성과 전략적·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의 매각, 기업합병,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회수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민영화 이전부터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북유럽 국가들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R&D 투자의 효율화를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가 필요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교육 및 정부 지원체계의 개편, 산학연 및 국가간 협력을 촉진하는 클러스터의 활성화 등이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
- 지식경제의 도래에 발맞춰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음
- 우리나라 R&D 투자 비중은 2011년 GDP 대비 4.0%로 OECD 국가들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R&D 투자의 효율성은 여전히 미진하므로 투자의 양적 확대에 앞서 질적 개선이 필요

차 례

요 약 / v

Ⅰ. 서 론 / 1

Ⅱ. 북유럽 국가의 특징 / 3

1.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체계 ····· 3
2. 소규모 개방경제 ····· 6
3. 보편적 복지체계 ····· 9
4. 높은 신뢰수준과 투명성 ····· 11

Ⅲ. 1990년대 초반 금융 및 재정위기에 따른 정책 / 15

1. 1990년대 초반 금융 및 재정위기의 원인 ····· 15
   가. 금융자유화와 부동산 가치의 거품 현상 ····· 15
   나. 독일통일과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투기세력의 공격 ····· 16
2.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 18
3. 금융 및 통화정책 ····· 20
   가. 신속한 금융안정화정책 ····· 20
   나. 변동환율제로 전환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 22
4. 재정건전화 정책 ····· 23
   가. 재정준칙의 도입 ····· 23
   나. 복지지출의 삭감과 세원확대 ····· 27
   다. 공기업의 민영화 ····· 30
   라. 재정건전화 정책의 결과 ····· 34
5.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 ····· 35
   가. R&D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 35
   나.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 38
   다.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41

Ⅳ.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추이 / 45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영향 ····· 45
2. 덴마크의 금융안정화정책 ····· 48
3. 재정확대정책 ····· 50
4. R&D 투자의 질적 제고와 연구협력의 강화 ····· 54

Ⅴ. 요약 및 시사점 / 57

참고문헌 / 63

부록Ⅰ.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 67

부록Ⅱ. 북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도입 및 개혁 과정 / 69

부록Ⅲ. 북유럽 국가의 재정준칙 등의 도입 / 71

부록Ⅳ. 북유럽 국가의 기업 현황(2007년 기준) / 75

표 차례

[표 1] 북유럽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 8
[표 2] 복지유형별 재정지표 비교 (2011년 기준) ····· 10
[표 3] OECD SOCX 세부항목별 복지지출 현황(2009년) ····· 11
[표 4] 북유럽 국가의 재정준칙 등의 도입 현황 ····· 26
[표 5] 북유럽 국가의 복지지출 삭감 현황 ····· 29
[표 6] 북유럽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 34
[표 7] 북유럽 국가의 연구 분야 인력 현황 ····· 37
[표 8] 북유럽 국가의 산업 현황 ····· 40
[표 9] 핀란드의 기업 지원기관 ····· 42
[표 10] 스웨덴의 기업 지원기관 ····· 43
[표 11]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 45
[표 12] 유로존 재정위기 전개과정 ····· 46
[표 13] 북유럽 국가의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 현황 ····· 47
[표 14] 덴마크의 은행구제방안(Bank Support Package) ····· 50
[표 15] 덴마크의 성장계획(Growth Plan) ····· 50
[표 16]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53
[표 17] 북유럽 국가의 재정수지 전망 ····· 54
[표 18] 북유럽 공동연구 프로젝트 현황 ····· 56
[부표 1] 북유럽 국가의 기업 현황 ····· 75
[부표 2] 북유럽 국가의 고용 현황 ····· 75
[부표 3] 북유럽 국가의 부가가치 비중 현황 ····· 75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경제성장률 추이 ····· 1
[그림 2]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비중 ····· 6
[그림 3] 부패인식지수 (2012년 기준) ····· 12
[그림 4]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 ····· 18
[그림 5]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 ····· 19
[그림 6] 북유럽 국가의 공공부문 복지지출 ····· 19
[그림 7] 북유럽 국가의 재정수지 ····· 20
[그림 8] 북유럽 국가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 37
[그림 9] 북유럽 국가의 피고용인 천 명당 연구개발자 현황 ····· 38

Ⅰ.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규모 개방경제[1]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07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7%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2.9%로 1.8%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국가채무는 1997년에 GDP 대비 11.9%에서 연평균 1.5%p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34.8%에 이르고 있다.[2]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확대, 15~64세 인구의 감소[3]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통일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은 우리나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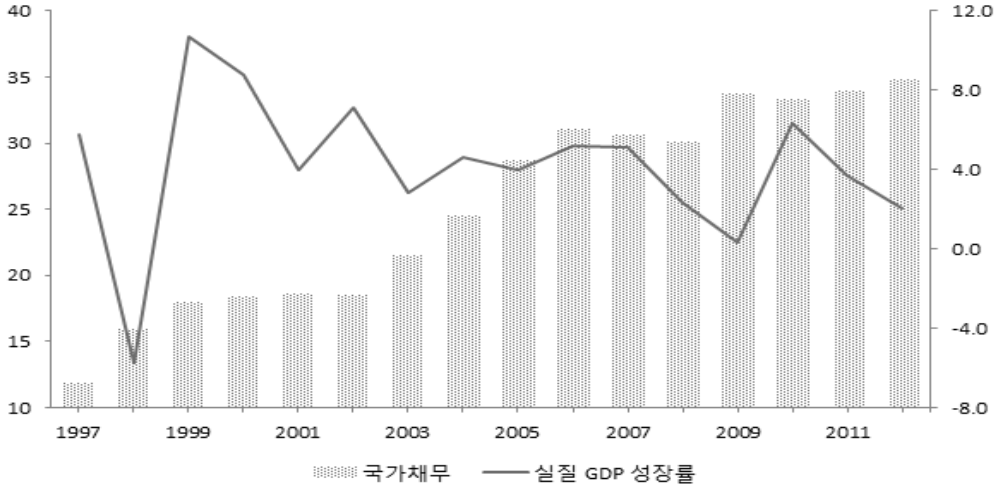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cis; e-나라지표.

1) OECD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란 '규모가 작아 정책적으로 국제 가격·금리·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국제무역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2)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며,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1997년에 21.9%에서 2012년에 45.1%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중위 가정)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022만명 중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671만명(73.1%)이며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 3,289만명(63.1%), 2050년에 2,535만명(52.7%)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남유럽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과 경제성장을 보여주면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4]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5] 이들 북유럽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1990년대 초 발생했던 금융 및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6]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한 부동산 버블의 형성, 1990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수출 여건의 악화, 그리고 유로존 형성 과정 속에서 나타난 환투기세력에 의한 공격이었다. 또한 1960 ~ 19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한 복지지출, 관대한 실업 및 질병급여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도 재정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신속하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본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의 금융 및 재정 위기의 원인 및 정책대응,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 북유럽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Ⅳ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영향, 이후 북유럽 국가의 정책추이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4) UN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핀란드 등을 포함하나 본 보고서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지칭한다.

5) "The Nordic Countries: The Next Supermodel," The Economist, Feb. 2. 2012,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136-politicians-both-right-and-left-could-learn-nordic-countries-next-supermodel, 접속일자: 2013. 4. 26.>

6) 김득갑(2012), 유병규·김동열·조호정(2010), Jonung(2010)을 참조한다.

Ⅱ. 북유럽 국가의 특징

발트해 및 북해 주변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대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의 대부분이 바이킹의 후손으로 비교적 단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를 믿는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핀란드를 제외하고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중도주의 성향이 강하고 근대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가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양당 체제적 성격이 강한 영미계 국가들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립정권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수시장 발달의 한계로 일찍부터 수출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공업화 이전까지는 천연자원과 연관된 제품을 수출했으나 이후 첨단기술을 접목한 제조업의 발달로 수출 상품의 다변화를 이루어왔다.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부터 발달되어온 사회복지체제는 1960~1980년대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고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7] 본 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부문의 주요 특징인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체계, 소규모 개방경제, 보편적인 복지체계, 사회전반에 걸친 높은 신뢰수준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체계

북유럽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고전적인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계급간의 투쟁 대신 중용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조합주의적(corporatism) 의사결정방식을 선호한다.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정치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점진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7) 2007년을 기준으로 고용률(여성고용률)은 덴마크가 77.0%(73.2%), 핀란드가 70.3%(68.5%), 노르웨이가 76.8%(74.0%), 스웨덴이 74.2%(71.85)이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대신 보편적 복지체계를 통해 형평과 분배,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 왔다.[8)]

하지만, 처음부터 조합주의에 기반한 민주적인 합의체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노사관계는 격화되었다. 이연호(2003)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형성된 시기는 노동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말부터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870 ~ 1880년대에 노조가 설립되었고 1898년에 노동조합연맹이, 1899년에는 전국협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9)]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1898년에 고용자 연맹도 조직되었고 노사관계는 격화되었다.

이런 격화된 관계가 합의의 정치문화로 전환된 데에는 1930년대 사회민주당과 농민당간에 맺어진 적록(Red-Green) 동맹과[10)]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영향이 컸다. 비록 사회민주당이 오랫동안 다수의 지지를 받아 왔지만 비례대표제[11)]로 운영되는 북유럽 국가에서 한 당의 단독 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당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했고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있어 타협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노조의 조직률과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중앙집권화는 조합주의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분야별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여기에 관료, 국회의원, 노사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회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관련 단체에 송부되었고 단체에서 답변서를 회신하면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안건은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쳐 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로비가 중심이 되는 영미식 체계와 달리 포괄적인 대표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12)]

---

8) 이연호, “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 2011.

9) 북유럽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1980년대에 이미 스웨덴이 78.0%, 덴마크가 76.3%, 핀란드가 70.4%, 노르웨이가 55.7%으로 이르고 있다.

10)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당시 널리 퍼져있던 계급투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민주당과 농민당 간에 연대를 이룬 것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1933년, 노르웨이가 1935년, 핀란드가 1937년에 협정이 이루어졌다. 덴마크의 경우 협정을 통해 기존의 54개 사회법을 4개로 간소화하고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덴마크가 북유럽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초석을 이루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 협약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와 농민 연합이 44년간 집권한 사회민주당정부의 출발점이 되었다.

11)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의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고, 그 외에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가 있다.

12)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옮김.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행정조직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입안된 정책이 노사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과 조합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은 북유럽 국가에 독특한 사회정책모델을 발달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이다. 이미 1920년대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스웨덴은 산업구조의 시기적절한 변화와 적정수준의 임금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1930 ~ 1940년대부터 보여온 높은 노조조직률과 중앙집권화 속에서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과 변화의 필요성은 1951년 경제학자 외스트 렌과 루돌프 마이드너에 의해 연대임금정책[13]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시장과 자본의 세계화는 조합주의에 기반한 렌-마이드너 모델에 변화를 가져왔다. 스웨덴 기업들은 내수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높은 임금 비용과 무역장벽을 회피하여 시장 접근성이 높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초과 이윤을 재투자하여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킨 렌-마이드너 모델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결국, 1982년 금속노조가 중앙임금협약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중앙집권적 단체노사교섭체제에서 탈퇴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앙교섭체계가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고용주 조합(SAF)은 사회보험과 노동환경을 제외한 임금과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산업별 노조에 위임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도 철수하였다.

비록 1980년대 이후 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은 북유럽의 정치·경제·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

pp.87-89. (이연호, "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 2011, pp.47-48 재인용.)

13) 연대임금정책이란 직종간의 임금격차는 인정하되 동일한 종류의 노동에 대해서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 하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자연 도태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실업자는 고용지원, 직업교육, 직접 일자리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재배치된다. 반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초과이윤은 임금노동자 기금(Wage Earners' Fund)으로 흡수되어 기술개발, 기업 경쟁력 강화, 주택 관련 복지비용으로 활용되었다. 1956년부터 시행된 연대임금정책을 위한 단체임금교섭은 전권을 위임받은 중앙노사단체(LO-SAF)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소규모 개방경제

소규모 개방경제인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규모(GDP)는 2012년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약 3,294억 달러, 덴마크가 약 2,358억 달러, 스웨덴이 약 4,109억 달러, 핀란드가 약 2,072억 달러로, 1조 5,402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노르웨이가 65,638달러, 덴마크가 42,176달러, 스웨덴이 43,176달러, 핀란드가 38,282달러로, 30,800달러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14]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일찍부터 수출주도의 개방경제를 지향해 온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70년에 이미 덴마크는 28.0%, 핀란드는 24.2%, 노르웨이는 36.7%, 스웨덴이 24.0%로, 약 16%대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39.7~54.5%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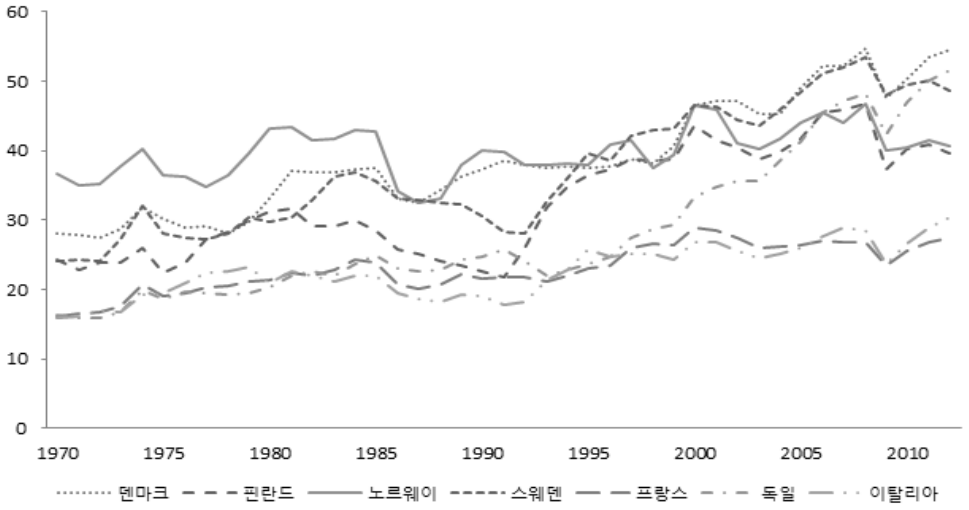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국가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공업화 전까지 비교적 풍부한 천연자원과 그와 관련된 제품을 위주로 수출하였다. 예를 들면, 산림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14) 노르웨이의 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495만명, 덴마크가 557만명, 스웨덴이 945만명, 핀란드가 539만명이다.

스웨덴의 경우 타르·목재·펄프·종이와 같은 임업제품과 철광석을, 노르웨이는 수산업 및 임업제품을, 국토의 62%가 농경지인 덴마크는 낙농업 제품을, 산림 비중이 높은 핀란드는 임업제품을 위주로 수출하였다.

공업화 이후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 비중은 줄어든 반면 지역의 장점을 살린 전통적인 제조 산업과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독보적인 산업분야들을 육성해 왔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후 공업화가 진행된 덴마크[15]는 일년 내내 많은 양의 바람이 규칙적으로 불어오는 자연조건과 함께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대치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그리고 Vestas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덕분에 풍력발전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밖에도 디자인 제품·의약품·식품 가공·가구 조명 장식품·해양운송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16]는 198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가 정보통신산업(ICT)을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전자·기계·금속 등 첨단기술제품·화학제품·식품·임업제품으로 수출품을 다변화하였다. 노르웨이는 1967년 북해 유전개발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철을 이용한 금속합금·수력발전[17]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석유·기계장비·수산물·알루미늄·강철 등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공업화가 진행된 스웨덴[18]은 세계대전 당시 전쟁수요로 공산품 위주의 산업이 발전되었고 196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철강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와 공작기계, 이케아(IKEA)와 같은 인테리어 가구, 전자제품, 통신자재, 선박,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의 주요 교역국은 대체로 인접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이며 이로 인해 유럽의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편이다.

---

15) 2012년 기준으로 덴마크의 산업별 비중은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22.3%),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21.8%), 제조업(19.0%), 무역 · 호텔 · 요식업(12.2), 운송 · 우편 · 통신업(12.1%) 순이며 농수산업 및 광업은 4.4%에 불과하다.

16) 2011년 기준으로 핀란드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34.3%, 도소매업이 32.3%, 건설업이 6.9%, 운수업이 5.9%, 기타 서비스업이 15.8% 등으로 나타났다.

17) 세계 6위의 수력 발전량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고지대 산악지역에 다수의 자연적 호수와 수괴가 있어 댐과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강수량이 많았던 해의 잉여 수량을 저장해 강수량이 적은 해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열 발전 전력을 이용하는 국가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18)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0%, 보건의료업이 19.4%, 무역업이 18.6%, 금융업이 11%, 건축업이 10%, 교육연구업이 8%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북유럽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GDP	2,358억달러	2,072억달러	3,294억달러	4,109억달러
1인당GDP	42,176달러	38,282달러	65,638달러	43,176달러
화폐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유로(EUR)	노르웨이 크로네(NOK)	크로나(SEK)
고용률	72.6%	69.5%	75.8%	73.8%
실업률	7.7%	7.8%	3.3%	8.1%
수출규모	1,124억 달러	799억 달러	1,681억 달러	1,967억 달러
주요 산업분야	서비스업, 목축업(낙농업), 의약,풍력발전, 기계,디자인	로봇,IT,통신	석유,천연가스, 해운,조선	철강,통신, 환경기술,자동차,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1.2%	2.4%	1.2%

주: 1. GDP, 1인당 GDP, 고용률, 실업률은 2012년 기준임
2. 수출규모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2011년, 스웨덴은 2013년 기준임
3.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참고로, 북유럽 국가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1994년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1999년부터 유로단일 통화를 채택했다. 이에 반해,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가입국이지만 유로화를 통화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존 지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좋지 않았고 재정정책의 제약으로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노르웨이는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과 유전업 분야의 자율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19] 그러나 노르웨이는 농어업과 관련된 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연합(EU)의 규약을 따르고 있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20]에 포함되어 있어 유럽단일시장 접근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19)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회원이 되면 스발바르 제도 어장에 대한 어획량 쿼터제를 적용받게 된다.

20) 유럽경제지역(EEA)은 1994년에 유럽연합(EU)의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4개국이 합쳐진 유럽단일 통합시장이다. 참고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의 EU)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국, 노르웨이를 비롯한 7개국이 중심이 되어 1960년에 결성되었고, 현재는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3. 보편적 복지체계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빈곤층에게 선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1] 이는 사회평등과 연대를 중요시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되는데, 국민부담률이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43.2~48.1%로 높은 편이다.[22]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데,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0.241~0.270이고 상대빈곤율(중위값 50%이하)은 6.4~7.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23][24]

분야별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에 해당하는 노령 및 유족 분야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월등히 높다. 한편, 근로무능력자 · 가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25]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복지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과 장애연금이 포함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원' 분야가 스웨덴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 덴마크가 4.9%, 노르웨이가 4.7%, 핀란드가 4.1%로, OECD 평균인 2.4%를 상회한다. 또한 가족수당 · 육아휴직 · 종일 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가족분야에서도 스웨덴이 GDP 대비 3.7%, 덴마크가 3.9%, 노르웨이가 3.2%, 핀란드가 3.3%로 OECD 평균인 2.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0년대 후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이민에 따른 노동공급의 심각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관련 지원 정책 등을 도입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을 포함

---

21) 복지유형별 특징은 부록 I 을 참조한다.

22) 북유럽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1965년에 GDP 대비 29.6 ~ 33.3%에서 1985년에 39.8 ~ 47.5%로 증가하였다.

23) 참고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 평등상태)에서 1(완전 불평등상태)의 범위를 가지며 독일이 0.291, 프랑스가 0.298, 이탈리아가 0.315, 영국이 0.324, 한국은 0.314를 나타내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의 경우 독일이 9.4%, 프랑스가 6.8%, 이탈리아가 11.5%, 영국이 10.2%, 한국이 15.3%에 이른다.

24) 참고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1 ~ 59.9%로 저부담 · 저복지 유형의 영미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조기은퇴연금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한다.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의 경우에도, 덴마크가 1.6%, 스웨덴이 1.1%, 핀란드가 0.9%, 노르웨이가 0.5%로, OECD 평균인 0.5% 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표 2] 복지유형별 재정지표 비교 (2011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유형	국가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공공부문 복지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북유럽형	덴마크	47.1	48.1	30.6	-2.0	59.9
	핀란드	30.9	43.4	29.2	-1.1	57.9
	노르웨이	33.6	43.2	22.4	13.4	34.1
	스웨덴	34.3	44.5	27.6	0.0	49.4
대륙형	프랑스	27.5	44.2	32.0	-5.3	99.5
	벨기에	29.8	44.0	29.7	-3.9	101.9
	독일	22.8	37.1	25.9	-0.8	86.3
	네덜란드	24.7	38.7	23.4	-4.4	75.9
영미형	영국	28.8	35.5	23.6	-7.9	100.4
	아일랜드	22.1	27.6	23.3	-13.3	112.2
남유럽형	스페인	19.7	31.6	26.4	-9.4	77.1
	이탈리아	29.5	42.9	27.5	-3.7	122
기타	일본	16.3	27.6	22.3	-8.9	210.6
	한국	19.8	25.9	9.1	2.0	36.2

주: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 OECD statistics.

[표 3] OECD SOCX 세부항목별 복지지출 현황(2009년)

(단위: GDP 대비 %)

유형	국가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자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택	기타
북유럽형	덴마크	8.2	0.0	4.9	7.7	3.9	1.6	2.3	0.7	0.9
	핀란드	10.2	0.9	4.1	6.8	3.3	0.9	2.0	0.5	0.7
	노르웨이	7.1	0.3	4.7	6.2	3.2	0.5	0.4	0.2	0.7
	스웨덴	10.2	0.5	5.0	7.3	3.7	1.1	0.7	0.5	0.7
대륙형	프랑스	12.3	1.8	2.0	9.0	3.2	1.0	1.5	0.8	0.4
	벨기에	8.1	2.1	2.5	8.1	2.8	1.4	3.7	0.2	0.8
	독일	9.1	2.2	2.3	8.6	2.1	1.0	1.7	0.6	0.2
	네델란드	5.8	0.2	3.1	7.9	1.7	1.2	1.4	0.4	1.4
영미형	영국	6.7	0.1	2.9	8.1	3.8	0.3	0.5	1.5	0.2
	아일랜드	4.5	1.1	2.4	7.1	4.1	0.9	2.6	0.3	0.6
남유럽형	스페인	7.7	2.2	2.7	7.0	1.5	0.9	3.5	0.2	0.3
	이탈리아	13.0	2.6	1.9	7.4	1.6	0.4	0.8	0.0	0.0
기타	일본	10.4	1.4	1.0	7.2	1.0	0.4	0.4	0.2	0.3
	한국	2.1	0.3	0.6	4.0	0.8	0.6	0.4	0.0	0.8
OECD평균		7.3	1.0	2.4	6.6	2.3	0.5	1.1	0.7	0.8

자료: OECD statistics.

4. 높은 신뢰수준과 투명성

북유럽 국가의 또 다른 특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와 투명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 투명성(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부패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법의 집행 외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공개와 같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국가적 차원의 건전성 시스템(integrity system)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반부패에 대한 공약, 언론의 자유 보장, 0%에 가까운 문맹률, 성평등 및 정보의 자유와 같은 인권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 하는 풍토, 정부의 공개성과 효과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공개성과 효과성은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오랜 역사[26], 정부의 주기적인 지출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27], 시민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오랜 역사를 지닌 옴부즈맨 제도[28] 등과 연관이 있다.

[그림 4] 부패인식지수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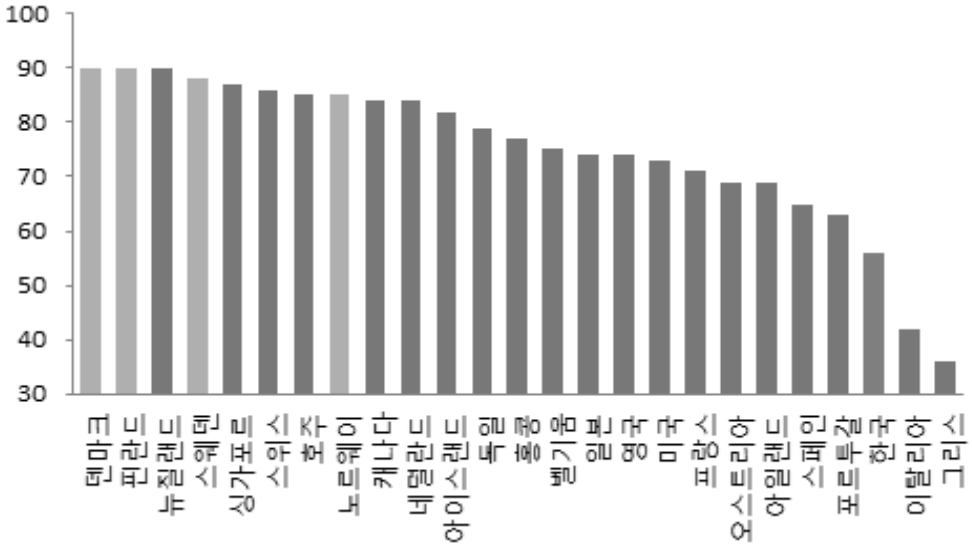

주: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옴부즈맨의 주요 기능은 개인의 권리구제나 불만을 해결하고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 헌법에 사법 옴부즈맨 제도를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15년에는 군사(military) 옴부즈맨 제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핀란드가 1919년, 덴마크가 1953년에 군사 옴부즈맨을 채택했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 군사 옴부즈맨을, 1962년에 의회 옴부즈맨을 도입하였다.

국가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총선 다음해인 1월부터 4년을 임기로

26) 스웨덴의 경우 1766년부터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27) 덴마크는 각 정부부처마다 월 단위로 부처의 여비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8) 남궁근 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거버넌스와 개혁」, 한울, 2006, 12~15쪽.

의회 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을 임명하며 정부와 시민 사이에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맨의 유형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평등과 시민인권을 위한 옴부즈맨 등이 있다.

덴마크는 1953년 개정된 헌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옴부즈맨을 임명하며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옴부즈맨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의회 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 외에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이 시장 관행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때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소비자 옴부즈맨(Ombudsman for Consumer Affairs)이 있다.

스웨덴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옴부즈맨이 이를 조사하는데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 인종차별, 아동권리를 다루는 옴부즈맨 등으로 구분된다.

핀란드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회 옴부즈맨, 아동 옴부즈맨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고용경제부 산하에 기업 옴부즈맨을 두어 노사 간에 고용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감시 및 조정할 수 있다.

Ⅲ. 1990년대 초반 금융 및 재정위기에 따른 정책

1980년대까지 보편적 복지국가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금융 및 재정 위기의 원인,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친 영향,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90년대 초반 금융 및 재정위기의 원인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발생한 금융위기[29]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 거품 현상과 독일 통일 및 유럽통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환투기세력에 의한 공세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1980년대 말 세제개혁에 따른 세입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

가. 금융자유화와 부동산 가치의 거품 현상

1980년대 초반 이후 실시된 금융자유화는 은행 간 가계 대출 부문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경기 호황과 더불어 초과 공급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과 소비를 촉진시켰다.[30] 1980년대 초까지 노르웨이 · 핀란드 · 스웨덴의 은행 시스템은 안정성을 추구하여 가계대출에 비해 주택공급이나 정부 발주 사업 등 특정 부분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규제하였다.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한은 없었으나 타 부문의 대출이자율에 대한 상한 규제가 있었고 이에 준하여 가계대출 이자율도 낮아 대출수요가 늘 공급을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하였고 충족되지 못한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31]

---

29) Honkapohja(2009)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금융위기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금융자유화가 일찍 시작되었고 비교적 투명하고 견고한 금융 감독시스템을 가진 덴마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30) 이창훈, “북유럽 3개국의 가계대출 부실발생 원인과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1.

31) 스웨덴의 경우 정부채와 주택관련 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졌고 은행들이 별도의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금융자유화를 추진[32]하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 간 외형적 확장과 가계대출 경쟁이 심화되었다.[33] 또한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가계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대출수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자유화 이후 가계대출의 급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형성하였다. 이런 추세는 노르웨이의 경우 1986년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1987년에 통화 및 재정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끝났다.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1980년대 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 침체가 더 커지게 되었다.

나. 독일통일과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투기세력의 공격[34]

유럽통화시스템(European Monetary System: EMS)[35]의 고정환율제도, 1990년 독일통일 이후 실질이자율의 증가와 유럽통화통합(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과정에서 나타난 투기세력의 공세에 대한 환율 방어의 실패는 북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유럽통화시스템(EMS)은 유럽공동체(EC)의 회원국들이 역내 환율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고정환율제도로,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36]를 기본통화로 설정하고 환율 변동폭이 기준 환율을 중심으

---

32) 노르웨이는 1983~1984년, 핀란드는 1982 ~ 1986년, 스웨덴은 1983 ~ 1985년에 탈규제화를 시행하였다.

33) 특히, 신규 고객들 중 경기순응적인 부동산 구입 예정자나 서비스업종 종사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1980년 90%에서 1989년 175%로, 핀란드는 1980년 45%에서 1990년 90%로 증가하였다. 또한, 순 저축액은 노르웨이는 1984년 5.2%에서 1985년 -2.5%로, 핀란드는 1980년 5.7%에서 1988년 -1.6%로, 스웨덴은 1980년 5.0%에서 1987년 -3.4%로 급감하였다.

34)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사례,”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front/customer/criticalCase.do, 접속일자: 2013.7.24.>

35) 이남구(2006)에 따르면,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역내 환율 안정의 보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1950년대 초반 이후 통화통합을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을 1979년 3월부터 시작된 유럽통화시스템(EMS)과 1994년 1월부터 시작된 유럽통화통합(EMU)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36) 유럽통화단위(ECU)는 독립된 화폐가 아닌 유럽공동체 회원국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되는 가상화폐단위로써 1999년 1월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회원국의 공통통화화폐로 사용되었다. 각 회원국은 ECU를 기준으로 화폐를 교환하였는데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네델란드 길더와 6.406 프랑과 같았다. 각 회원국의 통화 가중치는 GDP와 무역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로 ±2.25%가 되도록 제한하였다.[37] 이로 인해 회원국들간 다른 경제상황이 환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환리스크마저 없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고금리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0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은 동독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다. 이에 독일 정부는 긴축재정 및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유럽통화시스템의 고정환율제도 회원국들의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을 동반 상승시켰다.[38] 이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는 북유럽 국가들의 자산에 거품이 빠지는 요인이 되었으며 상당수의 은행들이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1991년 유럽통화통합(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창설을 위한 마스트리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이 체결되었고 유럽통화통합에 참여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정부부채, 환율과 장기금리에 대한 경제수렴 요건이 제시되었다.[39] 이는 독일통일 이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정책에 제한을 주었고 이런 상황은 국가별 조약 비준을 불투명하게 했다. 이런 가운데 1992년 6월 덴마크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이 부결되면서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에 따라, 투기 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국가들의 통화가 평가절하될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투기적 매도에 나섰다.[40] 특히, 유럽통화통합(EMU)의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만 소진한 채 큰 폭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해야 했다.[41]

---

37) 만약, 회원국이 이 환율 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 이 환율변동폭은 1990년대 초 위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15%로 확대되었다.

38) 노르웨이의 경우 평균 세후 실질이자율(after-tax real interest rate)은 1987년에 평균 0%에서 1992 ~ 1993년에 7%이상으로 증가하였다.

39)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경우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 회원국의 평균치를 1.5%p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금리의 경우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국 평균의 2%p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0) 유럽 외환위기는 예상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으로 환투기가 발생하였다. 즉,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경제적 비용이 포기하는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정부가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할 것이라고 시장참여자들이 예측함으로써 투기적 공격을 일으켜 고정환율제도가 실제로 붕괴되고 외환위기가 일어났다.

41) 핀란드는 1992년 9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마르카화(markka)를 15% 평가절하하였다.

2.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기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복지지출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 초반에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특히,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 -6.0%로, 스웨덴은 1993년 -2.1%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덴마크는 1987년 5.0%에서 1993년 9.6%로, 핀란드는 1991년 6.6%에서 1994년 16.6%로, 노르웨이는 1989년 4.9%에서 1993년 6.0%로, 스웨덴은 1988년 1.8%에서 1994년 9.4%로 증가하였다.

[그림 5]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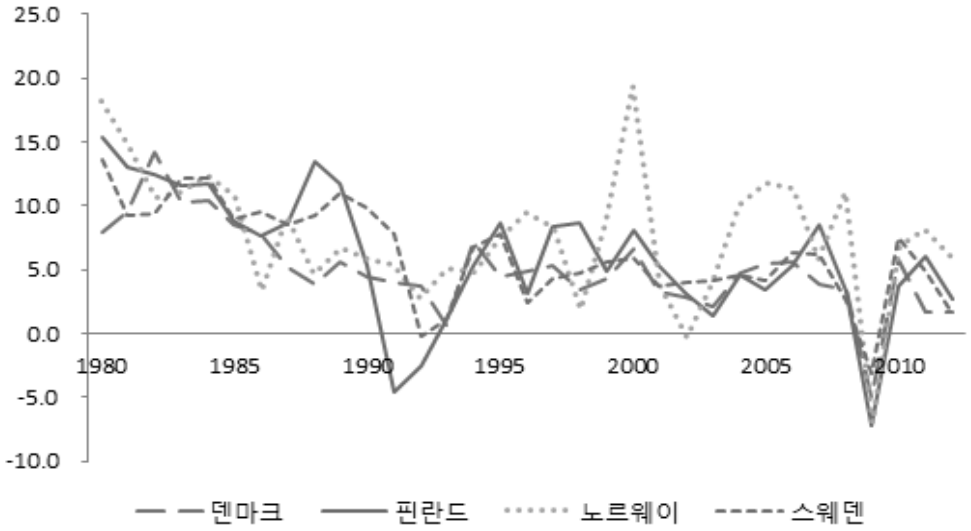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복지지출도 덴마크는 1987년 GDP의 23.8%에서 1994년 29.4%로, 핀란드는 1987년 23.5%에서 1992년 33.2%로, 노르웨이는 1987년 20.9%에서 1992년 24.2%로, 스웨덴은 1987년 29.6%에서 1993년 35.7%로 증가하였다. 이는 재정수지에도 영향을 주어 덴마크가 1993년에 GDP 대비 -3.9%, 핀란드가 1993년에 -8.2%, 노르웨이가 1992년에 -1.9%, 스웨덴이 1993년에 -11.2%를 기록하였다.

[그림 6]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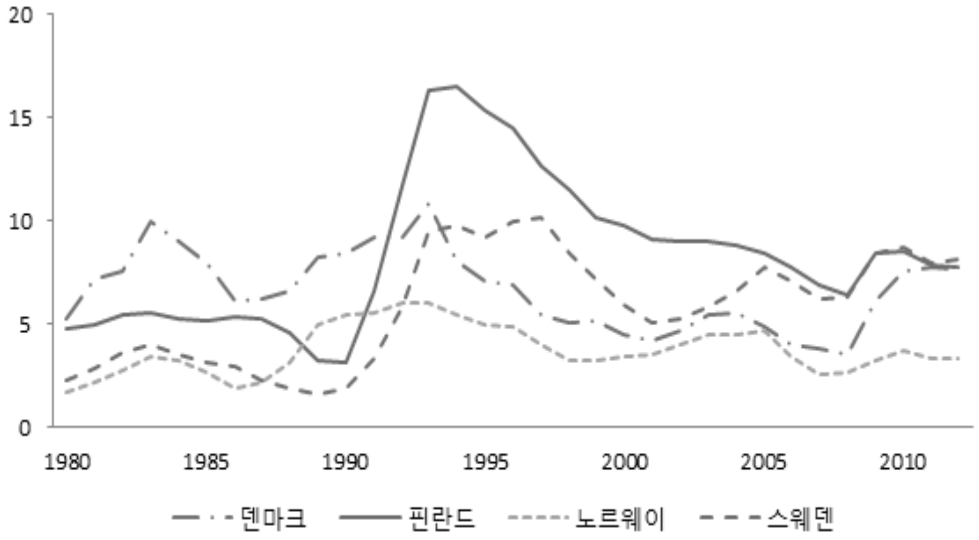

[그림 7] 북유럽 국가의 공공부문 복지지출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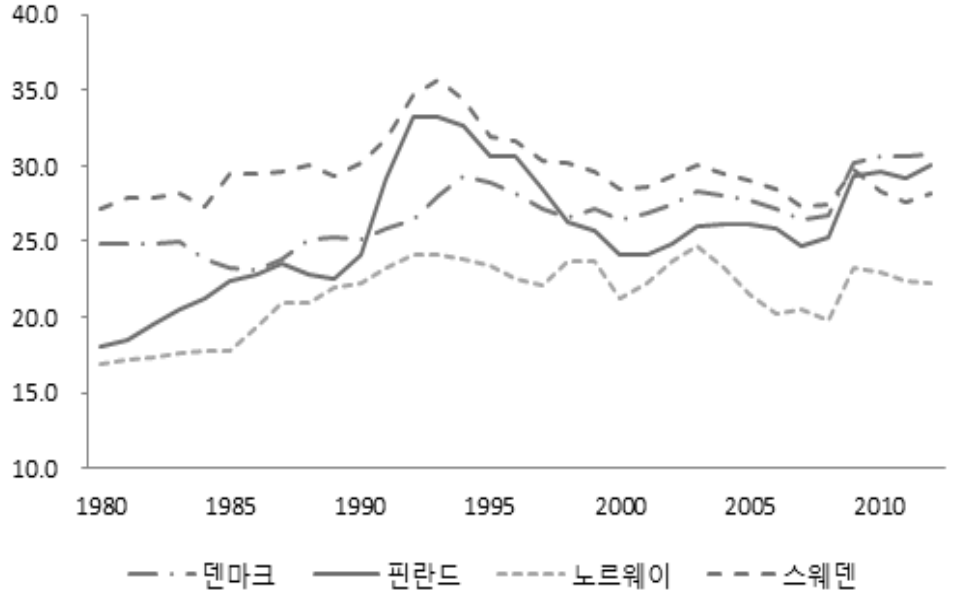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그림 8] 북유럽 국가의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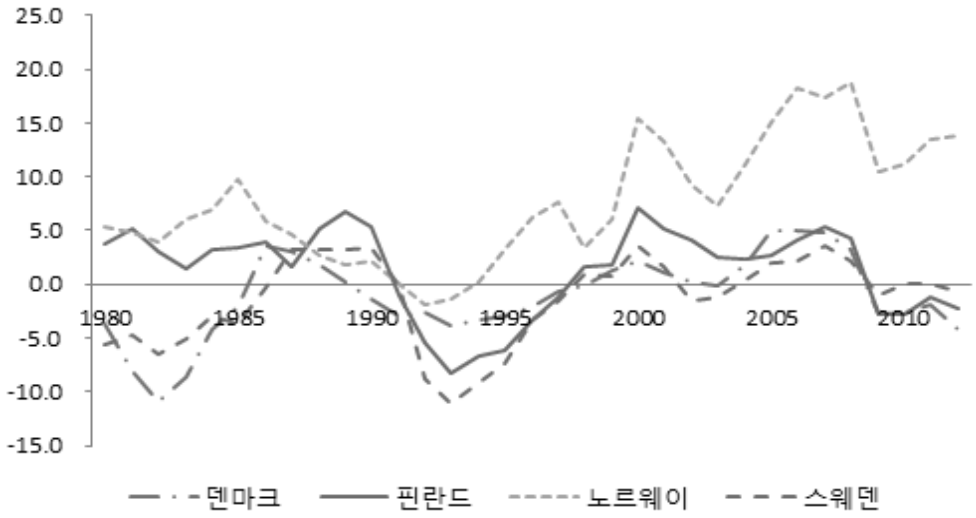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3. 금융 및 통화정책

가. 신속한 금융안정화정책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는 은행권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부실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출자, 예금보험제도의 활용, 부실자산 처리전담회사를 통한 부실은행의 일시 국영화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금융위기 발생초기에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일부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소유지분을 전액 인수하여 국유화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에 1992년 9월에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인 지급보증을 선언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에는 은행지원법(Bank Support Act)을 제정하여 은행의 부실자산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하였고 1993년 5월에는 금융위기 관리전담기구인 은행지원청(Bank Support Authority)을 한시적으로 설립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금융권이 안정화된 이후 스웨덴 정부는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중단하였고 1996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인수한 Nordbanken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참고로, 스웨덴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는 1993년에 GDP 대비 11%였으며 1993년까지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규모는 GDP 대비 4.5%였다.

핀란드의 경우 1989년 Skopbank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이에 중앙은행이 3개의 부실자산처리 전담 회사를 설립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1992년 3월 은행의 대출금리 및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수지 개선을 도모하였고 우선주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였으며 은행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 1992년 4월에는 예금보험기구인 정부보증기금(Government Guarantee Fund)을 설치하여 주식인수, 신규출자, 대출,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3년 재무부 산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예금보장한도를 감축하여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켰다. 한편,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된 이후 대형은행, 투자은행, 소형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을 각각 재편하여 그룹화 하였다. 참고로, 핀란드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1992년에 총 대출금의 9.3%였으며 구제금융을 위해 투입된 재정규모는 1994년까지 GDP 대비 15%에 이르렀다.

1988 ~1989년 동안 중소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점차 대형은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만으로 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1991년 3월에 정부은행보험기금(Government Bank Instrument Fund)을 설립하여 부실은행을 지원하였고 1991년 11월에는 정부은행투자기금(Government Bank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여 자기자본이 부족한 은행의 증자를 지원하였으며 1992년에는 3개의 대형 상업은행을 국유화하였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1991년 12월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부실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2억 크로네를 예탁방식으로 융자하였으며 1992년 6월에는 은행수지 개선을 위해 예탁금리를 2%대로 인하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1986년 설립된 노르웨이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f Norway)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노르웨이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규모는 1988 ~ 1990년에 GDP 대비 4%, 1991 ~ 1992년에 GDP 대비 2.6%였다.

나. 변동환율제로 전환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외환·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42] 스웨덴은 1991년 1월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43]하고 통화정책의 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 ± 1%p'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환유출의 급증으로 금리가 500%까지 인상되자 1992년 11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핀란드도 1992년 9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고 1993년 2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근원인플레이션의 2%'로 채택하였다. 1999년 1월에 유럽통화동맹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핀란드는 마르카(markka) 대신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통화동맹의 통화정책을 따르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스웨덴과 핀란드와 달리 노르웨이는 1990년대 초반에 환율목표제[44]를 도입하였다.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원유판매수입 등으로 재정여건이 보다 안정화되어 있었고 환율목표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쉽고 환리스크가 없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45] 그러나,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환율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유로지역의 물가목표 수준에 상응하는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1년에 '소비자물가상승의 2.5%이내'로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전환하였다.

---

42)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던 덴마크는 현재까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1유로에 7.46 덴마크 크로네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75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43)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에서 사전통지로 전환하고 중앙은행 총재의 해임요건을 엄격화 하였다.

44) 한국은행(2012)에 따르면, 통화정책 운용형태에는 중간 목표로 통화량, 금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통화량 목표제, 금리 목표제, 환율 목표제가 있고 중간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물가안정에 도달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있다. 환율 목표제는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으며 환리스크가 적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율목표제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금리조정을 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자국의 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5) 환율목표제 도입 이후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는 대체로 긴축적이었으며 크로네화의 가치 회복과 수요증대 압력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4. 재정건전화 정책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후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획했던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긴축재정정책과 더불어 재정준칙이 도입되었고 추가적인 세원이 확충되었으며 공적연금 및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지출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가. 재정준칙의 도입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준칙[46]의 도입, 독립적인 재정기관의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덴마크,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992년과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의 'GDP 대비 60%'의 국가채무 한도와 'GDP 대비 3% 적자'의 재정수지 한도를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다양한 재정준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47]

스웨덴은 1997년에 지출한도를, 2000년에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년도 예산체계를 도입한 스웨덴 정부는 춘계예산안(Spring Fiscal Policy Bill)에서 향후 3년 동안 중앙정부의 명목 총지출 한도와 27개 분야별 지출상한을 설정하였고 경기변동으로 인해 최초 계획과 달라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여유분(Budget Margin)을 두었다.[48] 또한, 2000년에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평균 2%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였다.[49] 이 밖에도 2007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정정책위원회

---

46) 김정미 · 이강구(2013)에 따르면,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지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재정운용목표를 의미한다.

47) Budina. Nina et. al., "Fiscal Rules at a Glance: Country Details from a New Dataset," IMF, 2012, pp.21 ~ 60.

48) 지출한도와 실제 편성된 예산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예산여유분은 당해연도(t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1%, 이듬해(t+1년도)에 편성 예산의 1.5%, t+2년도에 2%, t+3년도에 최소 3%를 예산여유분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기 지출한도까지만 제안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라기 보다 재정정책의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49) 그러나, 김정미 · 이강구(2013)에 따르면, 2000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스웨덴 정부는 2011년에 GDP 대비 2%에서 1%로 하향조정하였다.

(Fiscal Policy Council)를 설립하였다.

핀란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그리고 다년도 지출한도를 도입하였다. 1991년에 도입된 중기재정계획은 1995년에 계획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감세정책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실질가치로 부처별 지출상한이 설정되었다. 별도의 예비비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이 발생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핀란드 정부는 199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중앙정부의 채무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채무준칙을 운영하였고 1999년에는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하는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였다.[50] 마지막으로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연간 부처별 지출한도가 있었으나 2000년대 초까지도 국가채무가 증가하자 2003년에 다년도 지출한도(expenditure ceiling)가 도입되었다. 다년도 지출한도의 기간은 4년이며 중앙정부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범위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이자지출이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출항목, 사회보장지출, 연금지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기 지출한도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지출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가치로 변경되었고 경기변동에 따라 특정 해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해의 지출한도에서 최대 1억 유로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51]

덴마크는 재정수지준칙, 지출한도, 중기재정계획, 수입준칙을 차례로 도입하였다.[52] 1992년 도입된 재정수지준칙은 중기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후 재정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2001년에는 201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였으며 2007년에는 2010년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2011 ~ 2015년까지는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53] 또한 1994년에 지출한도가 도입되었

---

50) 2007 ~ 2011년까지 재정수지가 잠재 GDP의 1% 흑자를, 2011년 이후로는 GDP 대비 1%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51) Ljungman, Gösta, "Expenditure Ceilings-A Survey," IMF Working Paper, IMF, 2008, p.20~26.

52) 참고로, 덴마크의 재정기구인 Economic Council은 경제 및 장기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노조, 경영협의체, 중앙은행과 정부로부터 선발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장관에 의해 임명된 4명의 전문가가 공동 의장직(common chairmanship)을 수행하고 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때 덴마크 경제의 2 ~ 3년간 전망, 노동, 복지, 소득분배 등 주요 이슈를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여 논의한다. 2007년에 환경경제위원회(Environmental Economic Council)가 추가로 설립되어 재정기구는 이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이들 위원들을 지원하는 약 20명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다.

는데 2006년까지 정부지출이 실질가치로 연간 0.5%씩 증가하도록 설정되었고 2007 ~ 2008년에는 경기변동조정 GDP(cyclically adjusted GDP)와 정부지출의 실질증가율 만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1997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는데 2005년까지 공공부문의 지출감소와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54] 또한, 덴마크 정부는 2001 ~ 2011년까지 재정수입준칙을 운영하여 환경적 이유, EU 의무준수, 또는 세입의 초과가 다른 세금의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외에 직 · 간접세의 인상을 제한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에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석유수입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적 재정적자(non-oil structural deficit)가 정부석유기금(Government Petroleum Fund)[55]의 장기적인 실질수익률인 4%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준칙은 연이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가격의 하락, 2001 ~ 2002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운영, 국가회계제도의 변경으로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으며 2006년에 이르러서야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었다.[56]

이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은 단년도 예산체계에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다년도 예산체계와 재정준칙을 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지출 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국가별 재정건전성에 미친 효과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국가채무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53) 재정수지준칙은 2009년과 2011년에도 변경되었다. 2009년에는 2015년까지 최소한 균형수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2011년에는 2015년까지 0.5% 적자 수준을, 2020년까지 구조적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4) Landback, Erik J., "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s – Lessons for Austria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IMF Working Paper, IMF, 2008, p.26.

55) 정부석유기금은 석유수익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자산운영부처인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에서 관리하고 있다. 석유수입은 노르웨이 경제의 과잉투자현상을 막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조성된 펀드의 시장가치는 약 5조 크로나(GDP의 183%)에 해당한다.

56) Anderson, Barry, Teresa Curristine and Olaf Merk, "Budgeting in Norway," OECD Journal on Budgeting, OECD, 2006, p.8.

[표 4] 북유럽 국가의 재정준칙 등의 도입 현황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기 재정 계획		-1997년 도입	-1991년 도입 -1995년 계획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1999년 감세정책 포함, 실질가치로 부처별 상한 설정		-1990년대 도입
재정준칙	EC	-1994~2006년 동안 정부지출이 실질가치로 연간 0.5% 증가 -2007~2008년 경기변동조정 GDP와 정부지출의 실질증가율 만큼 증가	-2003년 다년도 지출한도 도입 -중앙정부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범위를 포괄 -경기변동에 따라 추가 지출 필요시 다음해 지출 중 최대 1억 유로 사용 가능		-1997년 중앙정부의 명목총지출과 27개 분야별 지출에 대한 지출상한 설정 예산 여유분 (Budget Margin)을 둠
	BBR	-1992년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2001년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2007 ~ 2010년 재정수지흑자, 2011 ~ 2015년 재정수지균형	-1999년 중앙 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적자	-중앙정부의 석유 수입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정부석유기금의 장기실질수익률 4%를 초과하지 않음	-2000년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내
	DR		-1995 ~ 2006년, 2011년 이후 중앙정부 채무의 감소		
	RR	-2001 ~ 2011년 직·간접세를 인상하지 못함			
재정기관		-1962년 덴마크 경제위원회 (Danish Economic Council) 설립			-2007년 재정위원회 (Fiscal Policy Council) 설립

주: 1) EC(Expenditure Ceiling: 지출한도), BBR(Budget Balance Rule: 재정수지준칙), DR(Debt Rule: 채무준칙), RR(Revenue Rule: 수입준칙)

2) 핀란드는 2013년 감사원에 지원조직 외에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설립함

자료: Budina et al.(2012); Xavier Debrun et al.(2013)을 재구성.

나. 복지지출의 삭감과 세원확대

스웨덴은 경제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6년 고용법을 제정하여 실업보험의 정부보전율을 90%에서 75%로 감소시켰다. 1998년에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조기퇴직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였고 지급액 기준을 최근 '15년간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에서 연금가입자의 소득 및 예상수명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은 18.5%로 동일하나 근로자의 기여율이 약 7.0%에서 9.25%로 인상하였다. 이밖에도 이자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고 질병보상임금 수준을 100%에서 65 ~ 9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회복지지출 전반에 걸쳐 삭감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이 1993년에 GDP 대비 35.7%를 정점으로 2007년에 27.3%로 감소하였고 연금지출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GDP 대비 7.7%에서 2007년에 7.2%로 감소하였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실시하였다. 우선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였고 공공부문의 연금지급액을 민간수준으로 인하하였다. 또한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3 ~ 68세로 상향하였고 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기준을 생애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실업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5세 미만의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참여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5년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각 20%, 6%씩 감축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수당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이 1993년에 GDP 대비 33.2%를 정점으로 2007년에 24.7%로 감소하였으며 연금지출도 1995년에 GDP 대비 8.8%에서 2007년에 8.3%로 줄어들었다.

덴마크는 최저 과세소득 한도의 인상을 통한 과세 대상의 확대와 환경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취업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시장개혁을 단행하였다. 개혁 전 관대한 실업급여 등의 영향으로 덴마크의 실업률은 1988년에 약 6.6%였고 북유럽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3년에는 10.9%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공공부문의 고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중소기업 중심의 덴마크 경제가 경기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해 고용의 유연화[57]가 필요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1992년 노동시장 구조문제 설명위원회(Committee for Clarification of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Labour Market)를 신설하였고 1993년에 노동시장 개혁안을 작성하였으며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을 실시하였다.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이 중 취업노력을 의무화하는 능동적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2001년까지 최대 1년으로 점차 줄여나갔다.[58] 이런 노력과 함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여 실업급여는 1993년 GDP 대비 5.3%에서 2007년에 1.9%까지 감소하였다. 고용보조금,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지출도 1995년에 GDP 대비 1.9%에 이르렀으나 2007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이밖에도 2006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2030년까지 퇴직 전 조기연금제도를 폐지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덴마크의 공공부문 복지지출은 1994년 GDP 대비 29.4%를 정점으로 2007년에 26.5%로 감소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은 '유연한 노동시장, 탄탄한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성된 '황금삼각형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1997년 실업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취업경력자만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보험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수급기간도 실업 전 소득 수준에 따라 1.5 ~ 3년으로 단축하였다. 종전에 퇴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던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학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도록 수급자격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1992년 GDP 대비 24.2%에서 2007년에 20.5%로 감소하였으며 연금지출은 1990년에 GDP 대비 5.6%에서 2007년에 4.7%로 감소하였다.

---

57) 고용 유연성이란 경기변동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적인 조직 혁신을 위해 고용자가 고용,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채용 및 해고의 용이성, 고용형태의 다양화,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임금조정,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58) 실업수당을 받는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실업자가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액은 실업급여에 비해 20% 정도 적지만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사회부조(social welfare benefit)로 전환된다.

[표 5] 북유럽 국가의 복지지출 삭감 현황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연금	- 2006년 노령연금 수령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 - 2030년까지 퇴직 전 조기연금제도를 폐지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변경 -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민간수준으로 인하 - 연금개시연령을 63~68세로 상향 - 급여기준으로 생애소득과 기대여명에 따라 차등 지급		- 1998년 조기퇴직 및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 급여기준을 '최근 15년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변경 - 명목확정기여 연금방식으로 전환 - 연금보험료율 18.5%로 조정
실업급여	- 1994년 실업급여 수급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취업노력을 의무화하는 능동적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2001년까지 최대 1년으로 점차 축소	- 근로자의 실업요율 인상 - 25세 미만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 참여시 실업수당 지급	- 1997년 취업경력자에 한해 실업보험 수급 가능 - 수령기간을 실업전 소득수준에 따라 1.5 ~ 3년으로 단축	- 1996년 실업보험의 정부 보전율을 90%에서 75%로 인하
기타		- 1995년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각 20%, 6% 감축 - 사회복지관련 수당의 물가연동제 폐지	- 퇴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던 장애연금을 의학적 사유에 한해 지급되도록 변경	- 주택보조금의 삭감 - 질병보상임금 수준을 100%에서 65~95%로 하향 조정

주: 노르웨이는 2011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함.

다. 공기업의 민영화

전체 산업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북유럽 국가들[59]은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 확장의 제한, 민간자본 유치의 제약,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20년대 이후 원자재의 개발과 중공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공기업이 설립되었고 1970년대 부실기업의 국유화로 공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재정지출 감축의 필요성을 느낀 스웨덴 정부는 의회(Riskdag)로부터 통신 · 우편 · 철도 · 석유 · 항공 등 주요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35개 기업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민영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민영화법이 1991년 말 도입되었으나 1994년 9월 폐지되었고 대신 헌법에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조문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관리의 원칙과 지분매각의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지분매각을 결정하였다.

1991년부터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92~1994년 사이에 방위산업체인 Celsius, 제약회사인 Pharmacia AB, 제강업체인 SSAB의 지분이, 1995 ~ 1997년에는 Nordbanken 은행 지분 30%가, 1998 ~ 1999년에는 에너지, 가스, 배수 관련 공기업의 지분이 매각되었다. 2000년에는 통신업체인 Telia AB의 주식 20.9%가, 2001년에는 지리검색회사인 Eniro AB의 지분이 매각되었다. 2002 ~ 2006년 사이에 민영화는 없었으며 2006년 9월 중도우파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210억에 상당하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2006년 Rezidor 호텔 그룹이 SAS Group에 약 $8억으로 매각되었고 2007년에는 정보통신업체인 Teliasonera의 주식 8%가 $26.8억에, 부동산업체인 Centrum Companiet I Stockholm AB가 약 $15억에 매각되었다. 2008년 2월에는 노르딕 증권거래소인 OMX의 약 8백만 주가 $50억에 매각되었고 식음료업체인 Vin & Sprit AB을 Pernod Ricard SA에 약 $80억으로 처분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회사인 Vasakronan을 약 $69억에 매각하였다. 스웨덴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수익은 약 $250억에 이른다.[60]

---

59) OECD(2008)에 따르면, 공기업 지표(매출액,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전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0 ~ 6의 값을 가짐)가 2003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4.75(2위), 스웨덴이 3.65(9위), 핀란드가 3.50(14위), 덴마크가 2.5(21위)로 나타났다.

60) Privatization Barometer, <http://www.privatizationbarometer.net/atlas.php?id=11&mn=PM, 접속일자: 2014. 1. 22>

핀란드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기업의 자본 확충, 자본시장의 활성화, 외국자본의 유치, 정부부채의 축소 등의 목적으로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위해 1991년에 유한회사에 관한 정부의 주주권 통제에 관한 법(The Act on Exercising the State's Control of Shareholders in Certain Limited Companies Engaged in Business Activity)을 제정하여 2/3, 1/2, 1/3 이하로 지분을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특수한 조건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분을 명목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61] 또한, 1999 ~ 2000년에 전략적 ·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공기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정부 소유권에 관한 목적과 매각 절차 등에 대한 지침과 감사원의 역할 및 임무를 포함한 공기업 소유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법체계(Government Decision-in-Principle on the State's Corporate Ownership Policies)를 마련하였다.

1988년 철강회사인 Outokumpu Oy와 자동차, 군수, 제지기를 주로 생산하는 Valmet Oy, 건축과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Rautaruukki Oy에 대한 주식공모가 이루어졌으나 그 규모는 작았다. 1991년 Esko Tapani Aho 수상이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도입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3년 대규모의 민영화가 있었고 그 수익은 약 $10억이었다. 1994년에는 스테인레스 강철 회사인 Outokumpu Oy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였고 화학업체인 Kemira Oy은 주식공모를 하였으며 Veitsiluoto Oy 자산의 35%를 사모펀드로 매각하였다. 1995년에 좌파-중도-우파의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긴축재정 프로그램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속되어 1995 ~ 1997년 사이 민영화 수익은 약 $30억에 달했다. 주요 민영화 사례는 1996년 제지업체인 Vetsiluoto Oy와 화학업체인 Kemira Oy의 주식을 분할 발행한 것과 Valmet Oy과 Kemijoki Oy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었다. 1998 ~ 2000년 민영화 수익은 $46억로 가장 높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통신업체인 Sonera Corporation에 대해 주식공모를 통해 약 $30억에 지분을 매각한 것이었다. 2004년에 핀란드 정부는 보험지주회사인 Sampo Plc의 자산 19%를 보험회사인 Varma Sampo에 약 $10억, 12월에 정보통신회사인 TeliaSonera AB의 5.3%를 약 $15억에 처분하였다. 2005년에는 석유회사인 Fortum의 7% 주식이 약 $9억에 매각되었고 Neste Oil의 자산 15%가 약

61) 의회는 공기업 전체 또는 경영지배권의 매각 대상을 결정하고 정부는 공기업 지분의 획득 및 매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7.4억에 매도되었다. 2006년에 핀란드 정부는 스테인레스 강철 회사인 Outokumpu Oy의 잔여 주식 7%와 자회사인 Outokumpu Technology의 주식 80%를 약 $10억에 매도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2007년 2월에 Sampo Bank를 Danske Bank에 $51.5억에 매도할 것을 확정지었다. 5월에는 비료회사인 Kemira GrowHow Oyj의 정부 지분 30.05%를 노르웨이 그룹 Yara에 약 $2.7억에 팔았고 하반기에 Kemira Oy의 주식 33%를 약 $10억에 매도하였다.[62] 핀란드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연간 수익이 €4억을 초과할 경우 €1.5억까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63]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의 비중이 낮았던 덴마크는 의회(Folketinget)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의해 마련된 개별법에 근거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64] 1993년 우체국 은행인 GiroBank 주식의 분할 발행(tranche)을 시작으로, 1994년 항공회사인 Kobenhavns Lufthavns의 25% 지분을 사모투자 형식으로 매각하였고 1996년에는 자산의 24%를, 2000년에는 15%를 분할 매각하였다. 1994년에 정보통신업체인 TeleDanmark 주식 41.58%를 주식공모로 약 $30억에 처분하였다. 2001년에는 덴마크의 철도 회사였던 DSB Gods을 민영화하였으며 2005년에는 덴마크 국영 우체국인 Post Danmark 지분의 22%를 약 $2억에 매각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덴마크와 독일 간 연락선 운송업체인 Scandlines를 Allianz Capital, 3i와 Deutsche Seereederei간의 컨소시엄에 약 $20억에 매각하였다. 2007년까지 덴마크의 공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은 약 $90억에 이른다.[65]

노르웨이에서도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전력 · 통신 · 은행 등 일부 공기업에 대

---

62) 큰 규모는 아니지만 2008 ~ 2013년까지 공기업의 주식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2월에 핀란드 정부는 증권거래소인 OMX AB의 주식 1.25%를 Borse Dubai에 매도하였고 4월에는 통신업체인 Elisa Corporation의 주식 0.65%를 매도하였다. 2009년 3월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antapark의 주식 32.1%를 Santa's Holding에, 2010년 12월에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인 Silta의 주식 10.1%를 Sampo Plc에 매도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컨설팅 업체인 FCG Finnish Counsulting Group의 주식 6.1%를 Municipality Finance Plc에, 2013년 2월에는 정보개발업체인 Arek의 주식 9.0%를 매도하였다.

63) Ownership Steering, "Privatisation," Ownership Steering, Jan. 27, 2014. <http://valtionomistus.fi/english/ownership-steering/privatisation/, 접속일자: 2014. 1. 27>

64) 예를 들면, TeleDanmark의 경우 1997년 10월에 제정된 Act No. 41에 의해서, Kobenhavns Lufthavns의 경우 2000년 4월 26일에 제정된 Act No. 207에 의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65) Privatization Barometer, <http://www.privatizationbarometer.net/atlas.php?id=15&mn=PM, 접속일자: 2014. 1. 28>

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기업별로 민영화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66] 1986년 알루미늄 회사인 Årdal og Sunndal Verk을 Norsk Hydro에 합병시킨 것을 시작으로 1993년에는 방위산업체인 Kongsberg Gruppen과 1995년에는 DnB NOR 은행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였다. 1999년에는 Postbanken 은행을 DnB NOR에 합병시켰고 버스운송회사인 TrønderBilene 지분의 66%를 Fosen Trafikklag에 매각하였다. 2000년에 수산업체인 Statkorn과 통신회사인 Telenor의 일부 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처분하였고 Christiania Bank og Kreditkasse 은행을 Nordea은행에 매각하였다. 2001년에는 주류회사인 Arcus, 제약회사인 Norsk Medisinaldepot을 매각하였고 석유 및 가스 회사인 Statoil의 일부 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처분하였다. 또한 전력회사인 Østfold Energi의 일부 지분을 Fortum에 매도하였다. 2002년에는 철도회사인 NSB Gods의 일부 지분을 Green Cargo에 매도하였고 2003년에는 여객선 및 버스 운송업체인 Finnmark Fylkesrederi을 Veolia Transport Norway에 매각하였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주요 천연자원 및 기간산업에 대한 다수의 경영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67]

이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공통적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가 요구되었고 민영화 이전부터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북유럽 국가들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 수익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68]

---

66) OECD, "Regulatory Reform in Norway," OECD publishing, OECD, p.30.

67) Strømgren(2013)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수는 약 70개이고 총 주식 보유량은 Oslo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약 30%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가 총액이 약 800억 유로에 이른다.

68) OECD, "OECD Economic Surveys: Sweden 2008," OECD Publishing, OECD, 2008, p.128.

[표 6] 북유럽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관련법	- 개별법에 근거	- 유한회사에 관한 정부의 주주권 통제에 관한 법 등에 근거 - 매각되는 지분 범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구	- 민영화 개별 건별 의회의 승인 요구	- 헌법(제9장 Financial powers)에 근거 - 매각되는 지분 범위를 의회가 결정
시기	1993~2007년	1988~2013년	1986~2003년	1991~2008년
분야	금융, 항공, 정보통신, 철도, 우체국, 여객선 운송 등	철강, 화학, 제지, 정보통신, 보험, 석유화학, 금융 등	알루미늄, 군수, 금융, 수산, 주류, 제약, 석유화학, 철도 등	군수, 제약, 철강,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지리검색, 부동산, 금융 등
수익	$90억	$284억	-	$250억

주: 노르웨이의 경우 매각에 따른 수익 규모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라. 재정건전화 정책의 결과

북유럽 국가의 재정준칙의 도입, 복지지출의 삭감과 세원의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등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개선되었다. 재정수지의 경우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적자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모든 국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7년까지 이런 추세를 유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덴마크는 1993년에 GDP 대비 92.4%, 1996년에 핀란드가 66.2%, 1997년에 스웨덴이 83.0%까지 증가했으나 2007년에 덴마크가 34.3%, 핀란드가 41.4%, 스웨덴이 49.8%로 감소하였다. 한편, 노르웨이의 경우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변동성을 완화하며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차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2002년 39.4%에서 2007년 56.6%로 증가하였다.[69]

69) Norges Bank, “Why does the Norwegian government hold debt?”, Jan. 9, 2013. <http://www.norges-bank.no/en/price-stability/government-debt/why-government-debt, 접속일자: 2013. 12. 16>;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he Central Government's Outstanding Debt,” Sep. 9, 2013. <http://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

5.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의 금융 및 재정 위기, EU 통합 등 세계화의 가속화, 지식산업의 도래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정책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1970 ~ 1980년대 핀란드의 산업정책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핀란드 통화의 평가절하, 사양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유치산업(infant industry)에 대한 보호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산업정책이 시장실패에 대한 개입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민간 R&D 투자는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부 투자는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나 저리의 대출 형태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EU의 경쟁력 강화규정 등으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졌다. 이에, 북유럽 국가들은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분야(ICT)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가. R&D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북유럽 국가들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198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의 경우 GDP 대비 2% 안팎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R&D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부문의 R&D 투자 비중은 1981년에 스웨덴이 GDP 대비 2.2%로 OECD 평균인 1.9%를 약간 상회한 반면, 덴마크 1.0%, 핀란드 1.2%, 노르웨이 1.2%로 낮았다. 그러나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1.6%인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덴마크가 2.6%, 핀란드가 3.5%, 스웨덴이 3.4%로 OECD 평균인 2.4%를 상회할 만큼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육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까지 핀란드의 교육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이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과

---

ics/economic-policy/the-central-governments-outstanding-debt.html?id=443404, 접속일자: 2013. 12. 16>

가 중시되었고 1994년에는 대학교 지원예산을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였다.[70] 또한 1993년에 대학체계를 일반 대학과 과학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폴리텍(polytechnic) 대학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였다. 스웨덴도 중앙집중화되고 획일적인 고등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1993년 교육 개혁 이후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을 신설 또는 개편하였고 학생 수를 대폭 증가시켰으며[71]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체계(performance-based fund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1989년에 일과 병행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교육(open education) 체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 연수에 근무 경력이 인정되도록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도 1990년을 시작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되, 대학운영의 목표, 재원배분, 수행방법에 있어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식 중앙집권체계(decentralized centralized system)를 도입하였다.[72]

이와 같이 1990년대부터 나타난 기술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 및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주의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정책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연구개발 인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OECD 교육 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 입학률이 1991년에 핀란드가 25 ~ 64세 인구의 33.3%에서 2007년에 36.4%로, 덴마크가 18.7%에서 32.2%, 노르웨이는 27.1%에서 36.4%, 스웨덴은 27.0%에서 31.3%로 증가하였다. 연구개발 관련 인력 증가율도 199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덴마크가 82.1%, 핀란드는 90.2%, 노르웨이는 66.1%, 스웨덴은 38.9%였고 피고용인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도 덴마크가 6.4명, 핀란드가 10.0명, 노르웨이가 3.4명, 스웨덴이 4.7명씩 증가하였다.

---

70) 교육부와 대학은 협정된 목표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활동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는 기존보다 많은 수의 학위자를 배출하게 했는데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었다. 한편 핀란드의 대학들은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에 근거한 외부 연구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학 내 연구비의 약 41%에 해당한다.

71) 1991년 법을 개정하여 2000년에 학생 수를 1991년에 비해 80%까지 증가시켰고 3개의 새로운 일반대학을 신설하고 전문대학 3개를 일반대학으로 승격시켰다.

72) Fägerlind, Ingemar and Görel Strömqvist (Eds.), *Reforming Higher Education in the Nordic Countir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 2004.

[표 7] 북유럽 국가의 연구 분야 인력 현황

(단위: 명, %)

	연구개발 전체 인력					피고용인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				
	1983	1991 (A)	1999	2007 (B)	비중 (B/A)	1983	1991 (C)	1999	2007 (D)	차이 (D-C)
덴마크	18,142	25,756	36,452	46,897	82.1	7.2	9.8	13.3	16.2	6.4
핀란드	20,219	29,575	50,604	56,243	90.2	8.4	12.6	22.5	22.6	10.0
노르웨이	15,969	20,252	25,400	33,635	66.1	8.1	9.9	11.0	13.3	3.4
스웨덴	45,759	53,604	66,674	74,437	38.9	10.7	11.8	15.9	16.5	4.7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연구개발의 핵심인 연구개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을 기준으로 덴마크가 피고용인 천 명당 4.6명, 핀란드가 6.0명, 노르웨이가 6.6명, 스웨덴이 5.9명으로, 덴마크를 제외하고 OECD 평균인 5.6명 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2007년 기준으로 보면 덴마크가 10.4명, 핀란드가 15.7명, 노르웨이가 9.6명, 스웨덴이 10.1명으로 OECD 평균인 7.5명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73]

[그림 9] 북유럽 국가의 피고용인 천 명당 연구개발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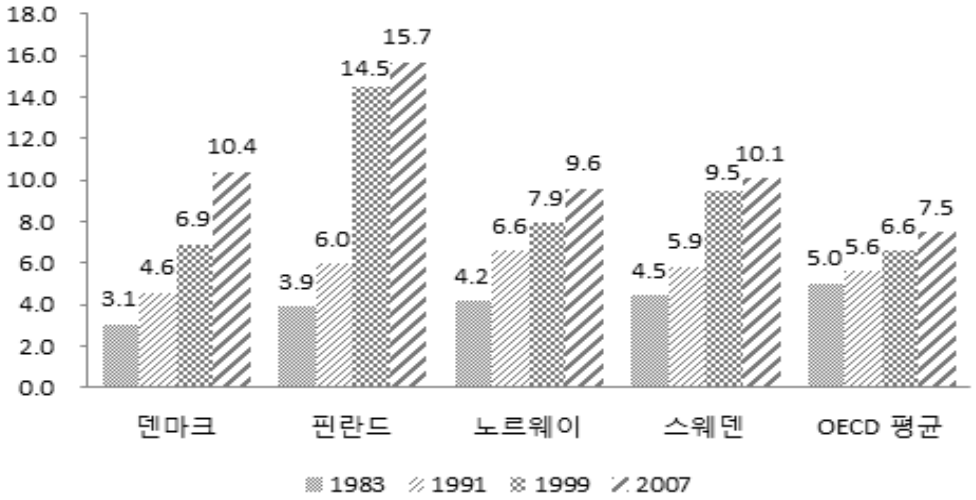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73)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전체 인력은 269,409명, 피고용인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은 11.5명, 연구개발자는 7.5명이다.

나.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북유럽 국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활성화시켰다. 클러스터는 전문성 강화, 연구의 효율성 제고, 경쟁우위 원천 기술 확보 등을 가능케 하는 생산자·고객·경쟁자들 간의 집적단지로, 지식 및 기술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주요 부처의 장관과 산업,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가 주축이 되어 1993년에 지역개발법을 제정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초기에는 임업, 기초금속, 에너지, 운송, 환경 및 복지, 이동통신 분야가 중심이 되었고 이후 20개 분야로 확장되었다. 지역기술연구소가 지역 클러스터의 운영과 네트워크 협력,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담당하고 있다. 클러스터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문가 센터(Center of Expertis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국제적인 경쟁력, 혁신성, 프로그램 기획안, 효율적인 조직구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장기간에 걸쳐 연구 지원이 이루어진다.

스웨덴에서도 혁신과 지역발달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1980년대까지 산업정책의 주요 기관이었던 스웨덴 기술개발 국가위원회(STU)를 산업개발청(Agency for Industrial Development : Industriverket) 및 에너지청(Energy Agency)과 합병하여 1991년에 스웨덴 기술 및 산업개발 국가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for Techn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 NUTEK)를 설립하였다. NUTEK은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예로, 1995년에 역량 센터 프로그램(Competence Centre programme)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정된 프로젝트에 최대 10년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과 지역대학의 공동 연구환경을 조성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공동 연구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졌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혁신 환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00년에 스웨덴 기술 및 산업개발 국가위원회(NUTEK)의 R&D 부분과 노동생활 연구위원회(Council for Working Life Research, RALF) 그리고 수송통신연구지원청(Agency Fund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 Research, KFB)이 통합된 혁신시

스템청(Swedish Agency for Innovations Systems , VINNOVA)을 설립하였다.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스웨덴 경제에서 지식 기반의 성장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등 연구 혁신 환경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2001년부터 지역 성장 프로그램(VINNVÄXT)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선발된 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성장(Research and grow , Forksa och vax) 프로그램이나 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기금(Foundation for Competence) 등도 도입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NT-Programme, FORNY(science and knowledge based innovation)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02년에는 Arena라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역 및 산업중심의 비즈니스 및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에는 이 보다 한 단계 발달된 노르웨이 전문기술센터(Norwegian Centres of Expertise: NCE)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10년 동안 12개의 프로젝트[74]를 기술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도 혁신 컨소시엄(Innovation Consortiums), 공인기술서비스협회(Approved Technological Service Institutes), 혁신 박사 후 프로그램(Innovation Post-Doc), 지역성장 센터(Scheme and Regional Growth Centres) 등을 설치하고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연구자와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를 보유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의료와 풍력발전 클러스터를 보유한 덴마크와 석유 및 해상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클러스터를 보유한 노르웨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74) 12개 분야에는 해양, 마이크로 및 나노 기술, 신소재, 국방, 심해, 관광, 식품, 농업, 암센터, 석유 및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해당된다.

[표 8] 북유럽 국가의 산업 현황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주요 산업분야	의약, 풍력발전, 식품가공, 기계, 가구 등 디자인 분야	정보통신, 임업 분야	전자,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정보통신 분야	석유, 천연가스, 해운, 조선
대표적인 기업(분야)	노보노르디스크(제약) 베스타스(풍력) 레고(완구)	노키아(통신) 코네(산전)	에릭슨(통신장비) 일렉트로룩스(가전) 이케아(가구)	스타토일 아자(석유) 노스키도 아자 (알루미늄, 재생에너지) 테레놀 아자(통신)
대표적인 클러스터 (분야)	메디콘 밸리(의약) 유틀란드 클러스터 (풍력발전산업)	울루 사이언스파크 (ICT)[1]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ICT), 웁살라-스톡홀름 생명공학 벨트 (바이오 산업)	오슬로 클러스터 (서비스) 로갈랜드(석유해양) 로스마달 (선박제조 및 건설)

주: 1) 울루 사이언스파크는 노키아의 R&D 거점임
자료: 김득갑(2012).

다.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북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인 고용증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유지, 새로운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75]의 육성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발달시켰다. 핀란드에서는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시트라(Sitra)와 산업투자 유한회사(Industry Investment Ltd.)와 같은 공공 벤처캐피탈기관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 초기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스웨덴에서도 자금과 함께 기술과 경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NUTEK의 SIC (Stiftelsen Innovations Centrum)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밖에도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스웨덴 산업개발펀드가 조성되었고 Swedish Invest Forum Cap Tec과 같은 기술기반 기업과 벤처 캐피탈 회사를 연계하는 투자 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2000년 이후 창업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Seed Capital Denmark'라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였고 민간투자자와 제휴하여 창업 초기단계부터 신용보증 및 지분투자를 제공하는 정부투자펀드인 Vaekstfonden을 운영하고 있다.[76]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자금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던 기업 지원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NUTEK을 중심으로 과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빈 우수성 센터 프로그램(VINN Excellence Centres Program),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Expert Competence Programme),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 인큐베이터 프로그램(National Incubator Programme)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스웨덴은 공공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TUFF(Technology Transfer for SME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덴마크에서는 비즈니스 혁신센터(Business Innovation Centres)와 산업개발센터(Industrial Development Centres)가 설립되었다.

---

75) 200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7~99.8%이고 전체 고용의 59.7% ~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는 53.5 ~ 64.5%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Ⅳ를 참조한다.

76) 서정호 · 구본성,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2013, 39쪽.

이와 같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속적인 R&D 투자 및 인적자원 확충에 대한 노력 등은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1985 ~ 1990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ultifactor productivity)[77] 증가율이 각각 2.4%, 0.3%에서 1995 ~ 2000년에 2.7%, 1.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86 ~ 199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덴마크가 1.5%, 핀란드가 3.4%, 노르웨이가 1.7%, 스웨덴이 2.4%였으나 1996 ~ 2000년 동안에는 덴마크가 2.9%, 핀란드가 4.8%, 노르웨이가 3.7%, 스웨덴이 3.5%로 증가하였다.

[표 9] 핀란드의 기업 지원기관

기 관	지 원 내 용	프로그램
수출보증공사 (Finnvera)	핀란드 기업의 국내운영, 수출, 국제화를 지원하는 전문금융업체로 대출, 보증, 벤처캐피탈 투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	핀베라 소액 대출 프로그램
기술혁신기금청 (Tekes)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7년 695개 영세기업지원에 6,900만 유로, 408개 소기업에 7,300만 유로, 152개 중견기업에 1,900만 유로 지원	툴리(TULI) 프로그램, 테게스(Tekes) 기술 프로그램
핀프로(Finpro)	기업의 국제화 지원기관으로, 세계에 있는 핀란드 무역센터(FTC)와 연계하여 해외시장과 무역에 관한 정보와 자문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국립연구개발기금청 (Sitra)	핀란드 의회의 감독을 받는 독립 공공재단으로 기업에 연구정보, 초기 자금,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국제 벤처캐피탈 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	시트라(Sitra) 혁신 프로그램
고용경제개발센터 (TE-Centres)	통상산업부, 농림부, 노동부의 공동 감독 아래 중소기업에 경영 관련 서비스와 자본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추구	
핀란드 학술원 (Academy of Finland)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연구기금의 조성과 과학 정책수립에 주력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을 재구성.

77)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과 같은 총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여러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경제에서 요소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노동, 자본, 천연자원이 2배 증가하였을 때 생산이 2배 늘었다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만약 생산이 2.5배 늘었다면 총요소생산성이 0.5배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R&D 투자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총요소생산성은 R&D 투자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스웨덴의 기업 지원기관

기관	지원내용	프로그램 사례
스웨덴 정부혁신 시스템청 (Vinnova)	혁신시스템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핵심 국가기관으로 산업과 사회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 연구개발 과제를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	- Vinn 우수성센터 프로그램 - 동태적 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프로그램(VINNVÄXT)' - 기초과학연구 장려를 위한 '베르젤리 센터' - 신규 연구개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 혁신시스템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주체 프로그램'
스웨덴 경제지역 성장청 (NUTEK)	벤처기업과 성장지역의 창출 및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기관으로, 지식·도구·방법의 개발 및 전달, 선정된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성	- 클러스터 프로그램 - Vinnova 와 함께 추진하는 개방형 사업계획대회인 벤처컵 프로그램
지식재단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산학연의 통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며 기술의 상업화 촉진	- 기업/대학 연구 프로파일
스웨덴 투자청	자동차, 기업서비스, 자본투자, 친환경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원자재, 포장, 부동산,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스웨덴 에너지청	산학연의 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생태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전환	- 에너지 기반 기술구매정책 프로그램 -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ALMI 비즈니스 파트너	성장과 혁신을 창출하는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	
산업개발 펀드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 투자분야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친환경기술, 벤처산업임	
AB IRECO Holdings	산업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업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을 수행	

자료: 스웨덴 정부(2007)을 재구성.

Ⅳ.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추이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영향

2008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의 부실[78]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유럽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부실은행에 대한 재정지원[79] 등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80] 국채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우려로 유럽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미국의 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가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면서 자금난과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위기 이전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높아진 물가와 임금으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었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

[표 11]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그리스	-3.2	-9.9	-18.3	-29.8	-44.9	-51.2
포르투갈	-0.2	-12.2	-19.8	-21.5	-23.5	-31.9
스페인	-1.7	-23.0	-83.1	-111.1	-144.6	-154.6
이탈리아	23.2	-5.7	-29.5	-48.1	-51.8	-65.3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3

78)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만든 주택저당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이에 투자한 선진국 은행들의 손실이 컸다. 2009년 IMF의 전망에 따르면, 각국별 은행의 손실 추정치는 미국이 1조 250억 달러, 유로존이 약 8천억 달러, 영국이 약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79)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자본확충, 채권발행 보증, 자산매입 등을 통해 2010년 말까지 635억 유로(GDP 대비 유로존 평균 1.6%)를 지원하였다.

80) OECD 통계에 따르면, 유럽 15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2007년에는 GDP 대비 0.7% 적자에서 2009년에 6.4%적자를 기록하였고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 3.7% 적자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부실의 확대가 재정위기의 시발점이 되었고 포르투갈은 민간부문의 적자확대가 재정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2010년 5월과 2011년 6월에, 아일랜드는 2010년 11월에, 포르투갈은 2011년 5월에, 스페인은 2012년 6월에 EU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다.

[표 12] 유로존 재정위기 전개과정

일정	주요 사건
2009. 10	그리스 정부 재정수지적자비율 수정 발표(4%→6%)
2009. 12	신용평가사,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작
2010. 1	PIIGS 국가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 급등시작
2010. 4. 23	그리스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신청
2010. 5. 2	EU · IMF, 그리스에 1,100억 유로 구제금융 결정
2010. 5. 10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설립(4,400억 유로 규모)
2010. 11. 21	아일랜드 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신청
2010. 11. 27	EU · IMF,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 구제금융 승인
2011. 4. 8	포르투칼 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 신청
2011. 5	EU · IMF, 포르투칼에 78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
2011. 6	그리스 정부, 2차 구제금융 신청
2011. 7. 21	EU · IMF가 그리스에 1,090억 유로 추가 구제금융 지원 결정
2012. 1. 30	EU 신재정협약 합의(영국, 체코 불참)
2012. 6. 10	스페인 정부, 구제금융 신청(1,000억 유로, 금융기관 부실처리 지원)

자료: 신후식·유승선,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2.

1990년대 초반 이후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의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 민간소비의 둔화,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 거시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되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덴마크가 GDP 대비 -4.9%p, 핀란드가 -8.8%p[81], 노르웨이가 -1.7%p, 스웨덴이

81) 서정호 · 구본성(2013)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투자재 중심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유로화의 절상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급감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4.2%p로 급락하였다. 반면, 실업률의 경우 덴마크가 2.6%p, 핀란드 2.0%p, 노르웨이 0.6%p, 스웨덴이 2.2%p 증가하였다. 경상수지도 덴마크[82]를 제외하고 핀란드가 -0.8%p, 노르웨이가 -8.3%p, 스웨덴이 -3.2%p 감소하였다.

[표 13] 북유럽 국가의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 현황

(단위: %, GDP 대비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09 차이
실질 GDP 성장률	덴마크	3.4	1.6	-0.8	-5.7	1.4	1.1	-0.4	-4.9
	핀란드	4.4	5.3	0.3	-8.5	3.4	2.7	-0.8	-8.8
	노르웨이	2.3	2.7	0.1	-1.6	0.5	1.2	3.1	-1.7
	스웨덴	4.6	3.4	-0.8	-5.0	6.3	3.0	1.3	-4.2
실업률	덴마크	4.0	3.8	3.5	6.1	7.6	7.7	7.7	2.6
	핀란드	7.7	6.9	6.4	8.4	8.5	7.9	7.8	2.0
	노르웨이	3.5	2.6	2.6	3.2	3.7	3.3	3.3	0.6
	스웨덴	7.1	6.2	6.3	8.5	8.7	7.9	8.1	2.2
경상 수지	덴마크	3.0	1.3	2.6	3.4	5.9	5.6	5.7	0.8
	핀란드	4.1	4.1	2.6	1.8	1.4	-1.5	-1.8	-0.8
	노르웨이	16.4	12.5	15.9	11.7	11.9	12.8	14.3	-4.2
	스웨덴	8.7	9.3	9.0	6.3	6.3	6.0	6.1	-2.7
재정 수지	덴마크	5.0	4.8	3.3	-2.8	-2.7	-2.0	-3.9	-6.1
	핀란드	4.1	5.3	4.3	-2.7	-2.8	-1.0	-2.2	-7.0
	노르웨이	18.3	17.3	18.8	10.5	11.1	13.4	13.8	-8.3
	스웨덴	2.2	3.6	2.2	-1.0	0.0	0.0	-0.4	-3.2
국가 채무	덴마크	41.2	34.3	41.4	49.3	53.1	59.9	58.9	7.9
	핀란드	45.6	41.4	40.3	51.8	57.9	57.9	63.3	11.5
	노르웨이	58.7	56.6	55.2	49.0	49.2	34.1	34.6	-6.2
	스웨덴	54.3	49.8	50.0	52.2	49.3	49.4	48.7	2.2

자료: OECD statistics.

82) 덴마크의 경우 수출 감소폭 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서 경상수지 흑자가 되었다.

재정수지도 악화되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덴마크가 6.1%p, 핀란드가 7.0%p, 노르웨이가 8.3%p, 스웨덴이 3.2%p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도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덴마크가 7.9%p, 핀란드가 11.5%p, 스웨덴이 2.2%p 증가하였다.

2. 덴마크의 금융안정화정책

1990년 초 북유럽의 금융위기 때와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부 은행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subprime mortgage)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의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83]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예방 차원에서 예금의 지급보증을 늘린다거나 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대책을 실시하였다. 핀란드는 예금지급보증 한도를 최소 25,000유로에서 50,000유로로 인상하고 구제금융 지원과 수출신용보증을 약 5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2008년 10월에 금융 안정화를 위해 1.5조 크로나(약 2000억 달러)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4.25%에서 2009년 말 0.25%까지 인하하였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시중 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9년에 1.25%까지 낮추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이 급증하고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자 5단계에 걸친 은행구제방안(Bank Support Package)을 마련하였다. 2008년 10월에 발표된 1단계 안정화 패키지(Stability Package)에서 정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출자를 통해 최대 350억 크로네(GDP의 2%) 규모의 예금보증기금(Deposit Guarantee Fund)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안정공사(Financial Stability A/S)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금융구제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주택 및 자산가격이 전년대비 9%p 하락하였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2009년 1월에 2단계 신용패키지(Credit Package)를 발표하여 3년 내 상환과 경영진의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최대 1,000억 크로네 규모의 구제금융을 은행과 모기지 회사에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

83)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subprime mortgage)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일부 덴마크 은행의 부실화로 덴마크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주가가 폭락하였다. 주 덴마크 대사관에 따르면, 2007년 4백억 크로네 이윤을 창출했던 덴마크 금융권의 2008년 손실 규모는 4백억 크로네(약 $80억)였다.

다.[84] 2010년 10월에 덴마크 정부는 어느 정도 금융권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제3차 해결 패키지(Resolution Package)를 제시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청산 및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구제금융을 중단하고 은행 도산시 정부의 고객별 예금보증 한도액을 75만 크로네로 제한하였다. 2011년 9월 덴마크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제4차 합병패키지(Consolidation Package)를, 2012년 5월에는 덴마크 기업들의 성장과 수출을 지원하고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발달패키지(Development Package)를 발표하였다.

[표 14] 덴마크의 은행구제방안(Bank Support Package)

	주요 내용
1차 (08.10 ~ 10.9)	- 부실은행의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향후 2년간 모든 은행들로 하여금 출연토록 하여 은행이 예금 지급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제한 지급을 보장 * 최대 350억 크로네의 예금(GDP의 2%)까지는 은행부문 자체적으로 지급 보장, 이중 100억 크로네까지는 금융부문 협회인 Private Contingency Association을 통해 지급 보장 * 매년 75억 크로네씩 2년 동안 시장 순응 보장 수수료 방식으로 추가 지급을 보장
2차 (09.1)	- 총 1,000억 크로네 상당의 구제금융을 은행(최대 750억 크로네) 및 모기지 회사(최대 250억 크로네)에 제공함 - 이자율은 금융기관 위험도에 따라 최고 11.25%(평균 10%)까지 적용 - 대부조건은 3년 내 상환하고 대상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임금을 삭감(세액공제액의 50%)하며 대출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차 (10.10)	- 구제금융 지급을 중단하고, 은행 도산시 정부의 고객당 예금 보증 한도액을 750,000크로네(약 136천불)로 제한 * 금융위기 이전 정부 보증액 상한선(300,000 크로네) 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은행 도산시 정부의 예금보증기금(State Deposit Guarantee Fund)에 의해 지불 보증 - 은행 도산의 경우 2008.10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관인 금융안정공사(Financial Stability A/S)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를 인수하여, 은행연합회와의 협의 하에 신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

84) 천억 DKK의 구제금융 중 약 절반정도가 사용되었는데, 덴마크 최대 은행인 Danske Bank에서 260억 DKK, Amagerbanken 은행이 11억 DKK 등을 사용하였다.

	주요 내용
4차 (11.9)	-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에 대한 정부와 보증기금의 재원대책을 발표하였고 합병의 주체로써 정부보증기금을 포함시킴 - 2012년 3월 30일부터 보증기금에 일정 기부금을 제공 - 국가적 차원의 주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조건을 규정
5차 (12.3)	- 성장 및 수출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을 150억 크로네로 확대 -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금융기관을 설립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이 계획대로 진행됨을 보여주기 위해 FIH Erhvervsbank 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발표

자료: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Dankske Bank(2012).

3. 재정확대정책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수출이 저조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였다. 덴마크는 2009년 3월에 28억 크로네(GDP 대비 약 0.15%) 규모의 소득세를 인하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가계가 특별연금기금에서 연금저축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pring Package 2.0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이 1.6%로 OECD 평균인 3.0%를 하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와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조기퇴직제도의 개편으로 2012년 동안 285억 크로네(GDP 대비 1.5%)에 달하는 퇴직연금 보험료를 환급하고[85]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확대(kick start package)를 실시하였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2013년 2월에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최소 연간 2%대로 끌어올려 민간부문에서 총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성장계획(Growth Plan)을 발표하였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출 억제, 학생장학금 제도 및 실업자에 대한 현금보조제도의 개혁,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민간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85) 덴마크는 조기퇴직 희망자들에 한해 추가로 세금을 걷어 연금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도에 최저 연금 수령 연령과 조기 퇴직연령을 높이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조기퇴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여금을 환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표 15] 덴마크의 성장계획(Growth Plan)

	주요 내용
민간부문에 대해 100억 크로네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	-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 주변국들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되, 은행업과 석유산업*은 인하대상에서 제외 * 대신 북해유전 참여 석유산업 컨소시엄(Danish Underground Consortium: DUC)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부담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계약체결 논의를 2043년까지 중단키로 합의 - 폐수 비용 등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 - 화물차량에 대한 마일리지세 폐지 및 철도화물수송 지원확대, 중량기준 포장세 인하 -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세금공제(tax credit) 확대 및 호텔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인상
60억 크로네 상당의 투자	- 2014년 중 공공투자를 20억 크로네로 확대(지자체내 투자에 우선순위 부여) - National Building Fund에서 공공부문 주택개량을 위해 40억 크로네 지출 - 민간주택 개량시 기술자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2년간 연장 및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투자 지원 - 원격지(remote area)에 대한 해안보호, 브로드밴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건설투자
교육 개선	- 2014 ~ 2017년 동안 성인교육 및 훈련 개선에 10억 크로네 배정 및 2013년 중 직업교육개혁안 마련
재원 확보 방안	- 공공 인프라 투자를 증가하는 대신 공공서비스 지출 증가를 억제 - 2020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기존 연 0.8%에서 2014년 0.4%, 2015년 0.5%, 2016년 0.6%, 2017년 0.7%, 2018-2020년 0.75%로 하향 조정 - 학생장학금 제도 및 실업자에 대한 현금보조제도(Kontanthjælp)의 개혁 - 조기퇴직자연금인 Capital pension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 과세 - 공공부문 임금증가율을 민간부문의 임금증가율에 맞게 하향 조정(현재 덴마크는 민간부문의 임금증가율이 공공부문보다 낮은 실정)

	주요 내용
실업자 사회 현금 보조 시스템 (Kontanthjælp) 개혁	- 30세 이하로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노동시장 진입준비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보조(Kontanthjælp)를 받지 못하며,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세전 월 5,753 크로네)만 수령 * 다만 30세 이하로서 교육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교육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 현금보조(Kontanthjælp)를 계속 수령 - 30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생장학금과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Kontanthjælp)를 수령 - 실업센터가 기존의 3개 군으로 분류해 고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회적 일자리(community service: 눈치우기, 거리 청소 등)에서 일을 해야 함. * 기존 3개군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서는 실업센터가 직업연결 포기 상태로 취급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관리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실업센터가 더 많은 고용연결을 하도록 유도 - 동거 커플에 대해서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한쪽이 일정 한도*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현금보조(Kontanthjælp) 수급자격을 박탈 * 자녀가 없을 경우 수입이 세전 월 22,000 크로네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세전 월 28,000 크로네 이상

자료: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핀란드는 2009년 1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율을 인하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도로 및 철도공사 등 국책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구개발비를 3,900만 유로로 확대하는 등 2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경제성장률이 GDP 대비 -8.5%로 하락하자 2010년도에 정부지출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이에 2010년과 2011년에 경제성장률이 3.4%, 2.7%로 다소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GDP의 4%이상을 차지하던 노키아의 부진과 최근까지 높은 폭으로 상승한 임금상승률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2012년과 2013년 경제성장률은 -0.8%, -1.0%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핀란드 정부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하려 하였으나 2009년 이후 세금 감면정책[86]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웨덴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57억 달러, 49억

86) 2009년 7 ~ 30.5%로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은 2012년 기준으로 6.5 ~ 29.8%로 큰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연금, 실업보험을 합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평균 세금은 소득의 25%, 법인세는 24.5%로 조정되었으며 부족한 세수는 부가가치세 1% 인상,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10~25%인상 등으로 충당하였다.

달러, 23억 달러(150억 크로나)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0년과 2011년 경제성장률이 6.3%, 3.0%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2년에는 1.3%로 OECD 평균인 1.6%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개혁 분야[87]에 35억 달러를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다. 노르웨이도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2009년에 non-oil GDP의 3%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한편, 2008년 이후 노령연금의 적자로 재정부담이 증가하자 2011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88]

이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한 결과, 북유럽 국가의 수출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던 2010년의 경우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6.3%과 3.4%로 OECD 평균(3.0%) 보다 높았던 반면, 덴마크는 1.4%, 노르웨이는 0.5%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덴마크의 경우 자국 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부진과 민간 소비의 위축이 주요 원인이었고 노르웨이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출 부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6] 북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1.6	-0.8	-5.7	1.4	1.1	-0.4	0.3	1.6	1.9
핀란드	5.3	0.3	-8.5	3.4	2.7	-0.8	-1.0	1.3	1.9
노르웨이	2.7	0.1	-1.6	0.5	1.2	3.1	1.2	2.8	3.1
스웨덴	3.4	-0.8	-5.0	6.3	3.0	1.3	0.7	2.3	3.0
OECD평균	2.7	0.2	-3.5	3.0	1.9	1.6	1.2	2.3	2.7

자료: OECD statistics.

87) 5대 개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과 경쟁력 제고(현 26.3%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등), 2) 청년 및 이민자 계층의 취업률 제고, 3) 금융체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4) 보다 공평한 복지 분배, 5) 효율적인 에너지, 기후 및 환경정책의 수행.

88) 주요 개편안은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던 연금 수령액이 소득수준과 노동기간에 따라 책정되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67세의 퇴직 연령을 62세로 인하하고 퇴직연령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되,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될수록 연금액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표 17] 북유럽 국가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4.8	3.3	-2.8	-2.7	-2.0	-3.9	-1.5	-1.5	-1.9
핀란드	5.3	4.3	-2.7	-2.8	-1.0	-2.2	-2.5	-2.3	-1.8
노르웨이	17.3	18.8	10.5	11.1	13.4	13.8	11.3	11.0	10.6
스웨덴	3.6	2.2	-1.0	0.0	0.0	-0.4	-1.4	-1.7	-1.1
OECD평균	-1.6	-3.7	-8.5	-8.0	-6.6	-5.9	-4.8	-2.7	-3.2

자료: OECD statistics.

4. R&D 투자의 질적 제고와 연구협력의 강화

중기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덴마크는 교육과 혁신분야에 GDP 대비 1%를 투자하고 있으나 성장, 기업 내 일자리 창출 등 연구 결과의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 하에 2012년 12월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서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혁신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와 대졸자의 비중을 OECD 상위 5개국 수준으로 높이고 연구결과의 상업화[89]를 약 2배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27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덴마크는 업종에 특화된 '성장팀(Growth Team)'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생태계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R&D 지원 인프라를 통해 벤처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정보통신 기업인 노키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기술과 시장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였다.[90] 이에 2009년 노키아, 테크놀로지센터 운영사인 테크노폴리스, 핀란드 기술청(TEKES)을 중심으로 핀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을 도입하였다. 사업 첫해 노키아에서 제공한 1,000여개의 아이디어 중 약 100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중

89) 2010년 기준 100여건이다.

90) 2010 ~ 2011년 사이에 36%에서 17%로 하락하였다.

14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였고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91] 프로그램 초기에는 창업 자금을 핀란드 기술청에서 절반가량 지원하였으나 이후 엔젤 및 벤처 캐피탈을 통해 약 1,000만 유로를 유치하였다. 이 밖에도 핀란드의 주요 혁신 담당기관인 핀베라(Finnvera), 핀프로(Pinpro), 테케스(Tekes) 등을 북유럽 최대 혁신 허브의 중심지인 오타니에미로 이전시켜 담당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2년 9월에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프라 및 R&D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 및 고용확대 등을 목표로 중기 R&D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92] 이에 따라 스웨덴 교육연구부의 연구 및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13 ~ 2016년간 총 115억 크로나 규모로 증가하였고 생명공학, 대학의 기본재정, 선도연구(Elite Research), 연구시설,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연구에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북유럽 각료회의[93]를 기반으로 환경,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의료 등의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각료회의 산하에 북유럽 국가들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NordForsk, 에너지 분야 연구를 전담하는 Nordic Energy Research, 기업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Nordic Innovation, 지역혁신 현안을 전담하는 Nordregio를 설립하였고 2008년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91) 조재은, "노키아, '중소기업 살리기'에 공헌," globalwindows.com, KOTRA, 2011.

92) 2013년에 227억 크로나, 2014년에 272억 크로나, 2015년에 256억 크로나, 2016년에 273억 크로나를 투자할 계획이다.

93) 북유럽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는 북유럽협의회 산하 기구로서 1971년에 북유럽 경제협력체인 Nordek이 무산된 이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에 대해 협의회의 의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유럽협의회는 안보와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페로제도, 올란드제도, 그린란드의 의회에서 선출된 87인으로 구성되며 북유럽 간 협력의제를 제기하고 최종 승인을 한다. 두 번의 연례회의가 열리며 의장은 1년 임기로 회원국이 교대로 수행한다.

[표 18] 북유럽 공동연구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내용
Top-level Research Initiatives (TRI)	- 2009년에 시작된 기후변화 관련 북유럽 공동연구·혁신 프로그램 - 북유럽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5년간 400M DKK(약 78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 - 북유럽 각료회의의 후원 하에서 NordFor, Nordic Innovation Centre, Nordic Energy Research가 사무국 역할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효율성 연구(Effect studies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등 6개 프로그램 운영
Sustainable Energy Systems 2050	- Nordic Energy Research의 핵심 사업으로 2010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11년 본격화 -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식과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저탄소 수송, 그리드와 시장에 관한 통합솔루션을 개발 - 북유럽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011년부터 4년간 총 137M NOK(약 265억원) 투자할 계획
Nordic eScience Globalization Initiative (NeGI)	- 2006년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eScienc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1년부터 본격화됨 - eScience 분야의 우수연구들을 지원하고 북유럽 및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과 기후변화, 건강 및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행연구, eScience 기법과 분석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함 - NordForsk, 북유럽 각료회의, 핀란드 한림원, 스웨덴 연구회, 노르웨이 연구회의 재정적 지원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8백만 유로(약 215억) 투자할 계획

자료: 이명화·류이현(2013)를 재구성.

Ⅴ. 요약 및 시사점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대 이후 시민의 조직화와 정치참여를 통해 점진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 및 높은 노조 조직률을 바탕으로 노사정(勞使政)간에 정책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해 왔다. 또한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조세를 기반으로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일찍부터 수출주도의 개방경제를 지향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국가차원의 건전성 시스템 운영,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행정권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등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수준과 투명성이 높다.

이런 특징들을 지닌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겪었다. 이는 1980년대 있었던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 버블의 형성, 1980년대 후반 석유가격의 하락, 1990년 독일통일과 구소련의 붕괴 등 수출여건의 악화 그리고 유로존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환투기 세력의 공세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1960 ~ 1980년대까지 급속하게 증가한 복지지출, 관대한 실업급여로 인한 높은 실업률 등은 재정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의 거시 및 재정지표는 크게 악화되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993년에 -2.1%, 1991년에 -6.0%로 급락하였고 실업률이 급증하여 덴마크가 1992년에 10.9%, 1993년에 핀란드는 16.5%, 1993년에 노르웨이가 6.1%, 1994년에 스웨덴이 9.7%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공공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져 덴마크가 1993년에 GDP 대비 -3.9%, 1993년에 핀란드가 -8.2%, 1992년에 노르웨이가 -1.9%, 1993년에 스웨덴이 -11.2%의 적자를 보였다.

이에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이를 재정적자의 구조적 문제점과 낮은 경제성장률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았다. 우선 금융안정화를 위해 부실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과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출자를 실시하였고, 부실자산 처리 전담회사를 통해 부실은행의 일시 국영화와 합병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며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썼다. 둘째, 북유럽 국가들은 연금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복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고령화와 유휴인력의 증가에 따른 빠른 복지지출 증가를 낮추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해 주요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고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 복지지출의 경우 1990년에 비해 스웨덴이 GDP 대비 2.9%p, 노르웨이가 1.8%p 감소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조성되어 있던 사회안전망과 고용지원 및 직업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반으로 1993년 이후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결과, 2007년 실업급여만 1990년대 대비 GDP 대비 2.3%p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는 재정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채무의 경우 덴마크가 1993년 GDP 대비 92.4%에서 2007년 34.3%로, 핀란드가 1996년 66.2%에서 2007년 41.4%로, 스웨덴이 1997년 83.0%에서 2007년 49.8%로 감소하였다.

한편, EU 통합 등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지식산업의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교육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고객, 경쟁자들 간의 집적단지인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였고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ultifactor production) 증가율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1985 ~ 1990년에 연평균 각각 2.4%, 0.3%에서 1995 ~ 2000년에는 각각 2.7%, 1.6%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도 1986 ~ 1990년 동안 연평균 덴마크가 1.5%, 핀란드가 3.4%, 노르웨이가 1.7%, 스웨덴이 2.4%였으나 1996 ~ 2000년 동안에는 덴마크가 2.9%, 핀란드가 4.8%, 노르웨이가 3.7%, 스웨덴이 3.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북유럽 국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채권에 투자한 일부 덴마크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덴마크 은행권 전반에 걸친 신뢰도가 하락하였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단계에 걸쳐 은행구제방안(Bank Support Package)을 발표하여 금융권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은행이 부실화되고 남유럽국가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북유럽 국가의 대외 수출여건은 악화되었고 내수 소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경제성장률이 덴마크가 -5.7%, 핀란드가 -8.5%, 노르웨이가 -1.6%, 스웨덴이 -5.0%로, 1990년대 초반 위기 상황 때보다 더 급락하였다. 2009년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여 덴마크가 6.1%, 핀란드 8.4%, 노르웨이가 3.2%, 스웨덴이 8.5%에 이르렀다. 또한 세수 감소와 재정확대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덴마크가 7.9%p, 핀란드가 11.5%p, 스웨덴이 2.2%p 증가하였다.

연이은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는 재정확대정책을 지속하였으나 경기 회복에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권의 신용도 하락과 주택시장 침체까지 겪었던 덴마크의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을 시행하였으나 국가채무만 증가한 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핀란드도 2007년 이전까지 매출액이 GDP의 4% 이상을 차지했던 노키아의 부진 이후 2007 ~ 2011년 사이 EU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임금상승률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다소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양호한 재정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북유럽 국가의 위기 및 극복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무준칙 등 새로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재정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감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년도 예산체계와 다양한 재정준칙 등을 도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35.1%로 OECD 평균인 108.8%에 비해 낮으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

으로 볼 때 결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00 ~ 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연평균 12.3%로 OECD 국가 중 7번째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94]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국가채무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95]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들에 비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복지지출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96]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일과 같은 대내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평소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지닌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97]

둘째, 북유럽 국가의 1960 ~ 1980년대 과도한 복지제도 확충이 1990년대 초 재정위기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복지지출 감소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확충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관대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유지하였던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위기 이전부터 고령화, 높은 조세부담률, 세계화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다. 또한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실업률로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 이에 북유럽 국가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하여 연금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해 나갔다. 그 결과, 스웨덴과 핀란드의 연금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덴마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실업급여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자원 부국인 노르웨이도 2008년 이후 노령연금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2011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

비록 여러 차례 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북유럽 국가의 고부담 고복지 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고령화 속도가 빠름을 감안할 때 복지제도 확충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

94) 국회예산정책처,「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75~76쪽.

95)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달러에 도달한 시점에 국가채무는 독일(1991년)이 GDP 대비 39.5%, 프랑스(1992년)가 39.7%, 영국(1997년) 48.9%, 미국(1989년)이 62.2%, 일본(1988년)이 70.4%였다.

96) 국회예산정책처(2012a)에 따르면, 2060년에 GDP 대비 218.6%에 이를 전망이다.

97) 김정미 · 이강구(2013)에 따르면, EU 27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EU 국가들의 재정준칙지수가 1단위 강화될 때마다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단기 0.33%, 중기 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우 고용보조금,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기에 인적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민영화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 확대의 제한, 민간자본의 유치의 제약,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민영화의 대상은 시장성과 전략적·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민영화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의 매각, 기업합병,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도 일부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위기를 전환점으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산학연 및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활성화시켰으며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였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도래에 발맞춰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전통적인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R&D 투자 비중이 1991년에 GDP 대비 1.8%에서 2011년에 4.0%로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여전히 R&D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져 추후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98]

98) 예를 들면,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SCI급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68.5%에서 2011년에 58.8%로 낮아지고 있고 SCI급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도 2007 ~ 2011년 동안 3.77회로 세계 평균인 4.85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연구 결과의 상업화를 높일 수 있는 기업 간 기술협력정도, 기술규제, 혁신 지원정도, 유사·중복 투자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주요국의 예산제도」, 국회예산정책처,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사례,”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front/customer/criticalCase.do, 접속일자: 2013.7.24.>

김득갑, “금융위기로 明暗이 엇갈리는 유럽 强小國 경제,” SERI 경제포커스, 2009.

김득갑 외,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12.

_____,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SERI 이슈페이퍼, 2012.

김성숙, “북구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연금포럼, Vol. 43, 국민연금연구원, 2011.

김세종, 「덴마크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육성시책 연구」, 중소기업연구소, 2005.

김영순 외,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인춘,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유럽연구, 제28권 3호, 2010.

김정미 · 이강구,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3.

김정식 외,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남궁근 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거버넌스와 개혁」, 한올아카데미, 2006.

박준 외,「각국의 거버넌스와 금융위기 대응」,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박형수 · 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서정룡,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한국은행, 2000.

서정호 · 구본성,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2013.

스웨덴 정부, “스웨덴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2007.

신후식 · 유승선,「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2.

안순권,「유럽목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원종욱 · 이주하 · 김태은, 「OECD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유병규 · 김동열 · 조호정,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제10권 18호, 2010.

여유진 · 정재훈 · 이서현,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남구, “유럽의 통화통합과정과 주요이슈,” 「유라시아연구」 제3권 제2호, 2006.

이명화 · 류이현,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이병기, “노르딕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 KERI Zoom-In, 한국경제연구원, 2010.

이연호, “노르딕 사민주의의 이론적 이해,”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 2011.

이창훈, “북유럽 3개국의 가계대출 부실발생 원인과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1.

조재은, “노키아, ‘중소기업 살리기’에 공헌,” globalwindows.com, KOTRA, 2011.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덴마크의 재정구조 개혁 개요,” 2009.

주은선 · 김영미 역, 「노르딕 모델」(The Nordic Model: Scandinavia since 1945, Mary Hilson, Reaction Books Ltd., 2008), 삼천리, 2010.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2008.

주 OECD 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 대표부, 2005.

중소기업연구원, “핀란드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중소기업연구원, 2009.

표학길 · 전현배 · 이근희,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럽회원국 정책 개발에 있어 유럽단일연구공간의 효과,”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한국은행,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 벤처 ·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북유럽 모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지방정부와 글로벌 경쟁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2.

Alestalo, Matti., Sven E.O. Hort, Stein Kuhnle, “The Nordic Model: Conditions, Origins, Outcomes, Lessons,” Hertie School of Governance, Working Paper, No. 41, 2009.

Anderson, Barry, Teresa Curristine and Olaf Merk, “Budgeting in Norway,” OECD Journal on Budgeting, OECD, 2006.

Anderson, Richard G., “Resoloving a Banking Crisis, the Nordic Way,” Economic Synopses, 2009.

Anderson, Torben M. et. al.,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2007.

Budina. Nina et. al., “Fiscal Rules at a Glance: Country Details from a New Dataset,” IMF, 2012.

Dankske Bank, “Danish Support Packages for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Dankske Bank, 2012. <http://danskebank.com/en-uk/ir/regulation/pages/bank-packages.aspx, 접속일자: 2013. 12. 12>

De Økonomiske Råd, “The Economic Councils, the Chairmanship, and the Reports,” De Økonomiske Råd. <http://www.dors.dk/sw3018.asp, 접속일자: 2014. 2. 3>

Fägerlind, Ingemar and Görel Strömqvist (Eds.), *Reforming Higher Education in the Nordic Countir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 2004.

Hagen, Kare and Nick Sitter, “Public Sector Reform and Economic Success: Nordic Lessons to be Learnt?” The Centre for European and Asian Studies at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2006.

Honkapohja, Seppo, “The 1990's Financial Crises in Nordic Countries,”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5/2009, 2009. <http://ssrn.com/abstract=1427260 or http://dx.doi.org/10.2139/ssrn.1427260, 접속일자: 2013. 9. 8>

Jonung, Lars, "Lessons from the Nordic Financial Crisis," AEA meeting in Denver. 2010.

Jonung, Lars, Jaakko Kiander, and Pentti Vartia, “The Great Financial Crisis in Finland and Sweden,” Economic Paper, European Commission, 2008.

Koch, Per and Juha Oksanen (eds.), “Innovation Policy Trends and Rationalities,” STEP - Centre for Innovation Research, 2003.

Landback, Erik J., “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s – Lessons for Austria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IMF Working Paper, IMF, 2008.

Norges Bank, “Why does the Norwegian government hold debt?”, Norges Bank, Jan. 9, 2013. <http://www.norges-bank.no/en/price-stability/government-debt/why-government-debt, 접속일자: 2013. 12. 16>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Oct. 10, 2011. <http://www.nbim.no/en/About-us/Government-Pension-Fund-Global/, 접속일자: 2014. 1. 3>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he Central Government's Outstanding Debt,”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Sep. 9, 2013. <http://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economic-policy/the-central-governments-outstanding-debt.html?id=443404, 접속일자: 2013. 12. 16>

OECD, “Regulatory Reform in Finland,” OECD Publishing, OECD, 2003.

OECD, “OECD Economic Surveys: Sweden 2008,” OECD Publishing, OECD, 2008.

Ownership Steering, “Privatisation,” Ownership Steering, Jan. 27, 2014. <http://valtionomistus.fi/english/ownership-steering/privatisation/, 접속일자: 2014. 1. 27>

Persson, Bo, “The Development of a New Swedish Innovation Policy. A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Working paper, Lund University, 2008.

Pesola. Jarmo, “The Role of Macroeconomic Shocks in Banking Crises,” Bank of Finland, Discussion Papers, 2001.

Privatizationbarometer, <http://www.privatizationbarometer.net, 접속일자 : 2013. 8. 26>

Schwab, Klaus, Sala-i-Martín. Xavier, Brende. Børge,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World Economic Forum, 2012.

Steigum, Erling, "The Norwegian Banking Crisis in the 1990s: Effects and Lessons," Working Paper Series 5/11, Centre for Monetary Economics BI Norwegian Schoool of Management, 2011.

The Economist, "The Nordic Countries: Then Next Supermodel," The Economist, Feb. 2, 2013.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136-politicians-both-right-and-left-could-learn-nordic-countries-next-supermodel, 접속일자: 2013. 9. 8>

Toporowski, Patryk, Patryk Toporowski "Growth and Jobs in the Policies of the EU Nordic Countries," Bulletin, No. 51, The Polish Institi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2.

Valton, Pertti, "Government's Venture Capital Policy in Finland," ECE/CECI Conference: Investing in Innovation, 2008.

Xavier Debrun et al., "The Functions and Impact of Fiscal Councils," IMF, 2013.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nk.mofa.go.kr/korean/eu/dnk/main/index.jsp, 접속일자: 2013. 9. 8>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we.mofa.go.kr/korean/eu/swe/main/index.jsp, 접속일자: 2013. 9. 8>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fin.mofa.go.kr/korean/eu/fin/main/index.jsp, 접속일자: 2013. 9. 8>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nor.mofa.go.kr/korean/eu/nor/main/index.jsp, 접속일자: 2013. 9. 8>

부록Ⅰ.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북유럽형 (공공 서비스 모델)	대륙유럽형 (보충주의모델)		앵글로 색슨형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남유럽형 (가족주의 모델)	동아시아형 (가족주의모델)
대표국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준공공 서비스모델)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제공주체	공공 부문 압도적 우위	공공 부문 우위	비영리 부문 우위	영리 부문 우위	가족 책임	-노인: 비영리, 영리 부문 우위 -아동: 가족책임
공여원칙	보편주의	보편주의 +보충주의	보충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보충주의
중앙-지방 정부 관계	지방 정부가 주된 서비스 기획·제공자	강한 중앙집중성 → 80년대 이후 탈집중화	-네덜란드 : 중앙집중 -독일: 분권화	중앙-지방 이중체계	최근 탈집중화	중앙정부 →계획수립 지방정부 →세부계획 수립
재원의 조세비중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아동: 높음 (조세 통한 충족) -노인: 보통(보험료 중 조세 50%)
지출 우선대상	아동	아동	노인	노인	노인	노인
일-가족 양립 가능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사회 서비스 계층화	낮음 (보편주의)	아동: 낮음, 노인: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낮음

자료: 김영순 외,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Vol. 125, 2007.

부록Ⅱ. 북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도입 및 개혁 과정

	1810~1929	1930~1949	1950~1969	1970~현재
노르웨이	초등교육체계수립 (1824) 산재보험 도입[1] 및 개혁 (1894, 1901, 1921) 건강보험 도입 (1909)	연금제도 도입 (1936)[2] 실업보험 도입 (1938) 아동양육수당 도입 (1946)	유급출산휴가 도입 (1956) 소득비례연금 도입 (1967) 건강보험 개혁 (1953)	아동양육수당 개혁 (1998) 연금개혁(2011)
스웨덴	초등교육체계수립 (1842) 산재보험 도입 및 개혁(1901, 1916) 공적연금도입 (1918)[3] 빈민구제법 제정 (1918) 아동복지법 제정 (1924) '인민의 집' 구상 제시(1928)	유급출산휴가 도입 (1931) 실업보험 도입 (1935) 가족수당 도입 (1935) 기초연금(AFP)도입 (1946) 아동수당 도입 (1948)	건강보험제도 도입 (1953) 공공부조법 제정 (1956)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투표(1958) 소득비례연금도입 (1960) 건강보험 도입 (1955)	육아휴직제도 도입 (1974) 현금지원제도 도입 (1974)[3] '공립유치원법'시행 (1975) 사회서비스법 제정 (1982) 건강 및 의료보장법 시행(1983) 아동양육휴가도입 (1994) 연금개혁(1998)[4]
핀란드	산재보험 도입 및 개혁 (1895, 1917)	국민연금 도입 (1937) 유급출산휴가 도입(1944) 아동수당 도입 (1948)	사회보험법 제정 (1963) 건강보험 도입 (1963)	아동양육수당 개혁 (1992, 1996) 연금개혁(1990~2005)
덴마크	초등교육체계수립 (1814) 국민 연금 도입 및 개혁 (1891, 1922, 1933) 산재보험 도입 및 개혁 (1898, 1916)	건강보험 도입 (1933)	아동양육수당 도입 (1952)	아동양육수당 개혁 (1986) 실업보험의 개혁 (1994) 연금개혁(2006)

주: 1) 산재보험과 질병보험은 특정집단에만 적용되는 보험이었음
2) 시민권에 기초하여 자산조사를 거쳐 부유계층을 제외하고 보편적 계층에게 지급됨
3) 실업보험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에게 국가 현금으로 수당 지급
4)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제도 틀을 제거하여 명목확정기여식(NDC) 소득비례연금, 프리미엄연금(PPR), 최저보장연금으로 재구조

자료: 주은선 · 김영미 역(2010), Alestalo, Matti., Sven E.O. Hort, Stein Kuhnle(2009) 재구성.

부록Ⅲ. 북유럽 국가의 재정준칙 등의 도입

국가	재정준칙 도입	내용
스웨덴	1997년에 지출한도 (expenditure ceiling)를 도입	- 정부가 제출한 중앙정부와 사회보험 예산안에 대해 향후 3년간의 지출한도를 의회가 승인하며 이를 초과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의회에 제안해야 함 (예산법 제4조) - 지출한도는 명목수치로 설정되어 단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정부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유인을 제거하고 이자지출은 지출한도 범위에서 제외됨
	2000년에 공공부문의 수지흑자 (surplus target) 또는 순차입 (public sector net lending) 목표를 도입	- 의회는 재정수지 목표를 '공공부문 순차입이 경기변동 하에서 GDP 대비 평균 2% 흑자 수준(surplus target is to be 2% of GDP as an average over business cycle, measured in terms of general public net lending)'으로 설정하였고 정부가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연 2회 의회에 보고함 - 2007년 이후 이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흑자수지 목표를 명목 GDP로 정할 경우 경기동행적인 우려가 있고 경기호황에 따른 대규모 수지흑자로 여유분의 항구적인 지출확대와 조세인하에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007년 재정기관 설립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들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의 설립
핀란드	1991년에 중기재정계획 (multi-year program)을 도입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을 목적으로 3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였으나 예산 연도를 제외하고 준수할 의무는 없음 - 1995년에는 3년 단위의 계획에서 4년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에는 감세정책을 추가하였으며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증대,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 투명성 및 간소성의 제고,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 및 성장 협약상의 재정적자와 부채한도 준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 등을 예산법에 명시 - 또한 중앙정부의 지출을 실질수준(in real terms)에서 1999년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목표도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 총지출에 대한 다년도 부처별 지출상한 (expenditure ceiling)을 설정하게 됨 - 응급예비비는 운영하지 않으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이 발생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정이 가능

국가	재정준칙 도입	내용
핀란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준칙을 운용	- 중앙정부의 채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
	1999년에 재정수지 준칙 도입	-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정수지를 잠재 GDP의 1% 흑자수준으로 변경하여 운용 -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2.5% 적자를 초과할 수 없음
	2003년에 지출한도 도입	- 4년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 비경기적(non-cyclical) 지출에 대해 실질 단위로 중앙정부의 지출의 약75%(약 일반정부 지출의 37%)를 한도를 설정
	2011년에 채무 규칙을 도입	- GDP 대비 중앙정부의 채무 비중을 2015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감축한다는 정치공약이 있었음
덴마크	1992년에 재정수지 준칙 도입	- 중기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설정 - 명시된 예외 조항은 없으나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2007년 8월부터 수립된 '2015 계획'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0.5% 이하로 낮추고 2020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설정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한도 설정	- 실질 공공소비의 증가율을 매해 0.5%로 제한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1.0%로 제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세수 준칙 (Revenue rule)을 운용	- 직접 및 간접세를 인상할 수 없음 - 환경적 이유나 EU 의무 준수에 의해 세금의 인상이 가능하며 초과 수입이 발생시 다른 세금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가능함 - 2012년 4월 다년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예산법에 대한 제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덴마크 경제 위원회에서 지출한도를 승인 및 통제함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출한도 설정	- 공공소비를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조정(cyclically adjusted)된 GDP와 실질 증가율로 설정

국가	재정준칙 도입	내용
	2009년에 지출한도 설정	- Denmark's 2009 Convergence Program 에서 공공소비를 2015년까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조정(cyclically adjusted)된 GDP 대비 26.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설정
노르웨이	2001년에 재정수지준칙 도입	- 중앙정부의 석유를 제외한 구조적 수지(Non-oil structural deficit)가 정부연금기금(Government Pension Fund)의 장기 실질 이자율과 동일해야 함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덴마크(1992년), 핀란드와 스웨덴(1995년)는 EU 가입에 따라 국가부채 한도와 재정 수지준칙을 도입	- EU의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서 일반정부부채를 GDP의 60%로, 재정수지는 GDP의 3% 적자로 제한
	2012년에 재정수지준칙 및 지출준칙을 도입	- EU의 재정협약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는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과 자동수정체계(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를 도입 - 기초 지출(primary expenditure)의 연평균 증가율은 장기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b), 박형수·류덕현(2012), Budina. Nina 외(2012)를 재구성.

부록Ⅳ. 북유럽 국가의 기업 현황(2007년 기준)

[부표 1] 북유럽 국가의 기업 현황

(단위: 개, %)

기업수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덴마크	57,580	303	153,826	420	211,406	723
(비중)	99.5	0.5	99.7	0.3	99.7	0.3
핀란드	68,172	298	144,993	311	213,165	609
(비중)	99.6	0.4	99.8	0.2	99.7	0.3
노르웨이	60,664	213	185,965	307	246,629	520
(비중)	99.7	0.3	99.8	0.2	99.8	0.2
스웨덴	136,053	510	423,766	502	559,819	1,012
(비중)	99.6	0.4	99.9	0.1	99.8	0.2

[부표 2] 북유럽 국가의 고용 현황

(단위: 명, %)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덴마크	413,554	230,931	780,109	393,802	1,193,663	624,733
(비중)	64.2	35.8	66.5	33.5	65.6	34.4
핀란드	328,435	246,991	452,855	279,732	781,290	526,723
(비중)	57.1	42.9	61.8	38.2	59.7	40.3
노르웨이	310,777	157,904	615,894	244,519	926,671	402,423
(비중)	66.3	33.7	71.6	28.4	69.7	30.3
스웨덴	658,140	487,400	1,172,767	555,529	1,830,907	1,042,929
(비중)	57.5	42.5	67.9	32.1	63.7	36.3

[부표 3] 북유럽 국가의 부가가치 비중 현황

(단위: %)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덴마크	57.0	43.0	69.0	31.0	64.5	35.5
핀란드	43.8	56.2	64.5	35.5	53.5	46.5
노르웨이	60.2	39.8	70.0	30.0	64.5	35.5
스웨덴	44.4	55.6	66.4	33.6	56.5	43.5

주: 노르웨이는 2006년 기준임

자료: OECD,「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010.

목 록

	제 목	집 필	발 간
85	우리나라 투자지원 조세제도 현황과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	이영숙	2013. 12
84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김정미 · 이강구	2013. 9
8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신영임 · 서재만	2013. 7
82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신동진	2013. 7
81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채은동	2013. 5
80	남부유럽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후식 · 유승선	2012. 10
79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장인성	2012. 9
78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서재만	2012. 9
77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채은동	2012. 8
76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 · 심혜정	2012. 8
75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신동진	2012. 8
74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혜정	2012. 7
73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장윤정	2012. 7
72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조은영	2012. 6
7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신영임 · 장윤정	2012. 6
70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최천규	2012. 5
69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성명기	2011. 12
68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 - 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	황종률	2011. 12
67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윤용중, 이강구, 윤준승, 서재만, 김정미	2011. 11

	제 목	집 필	발 간
66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1. 11
65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서재만	2011. 9
64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2011. 8
63	2010년 결산상 재정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준승	2011. 8
62	재정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	박승준, 이강구	2011. 6
6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원동아	2011. 2
6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0. 12
59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신후식, 유승선	2010. 12
58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서재만	2010. 12
57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이영환, 신영임	2010. 10
56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2010. 9
55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신동진	2010. 7
54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사점	유승선	2010. 7
53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김정미	2010. 7
52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혜정	2010. 6
51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신영임, 이영환	2010. 5
50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연훈수	2010. 2
4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나아정, 박승준	2009. 12
48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2009. 12
47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황종률	2009. 12
46	사회복지 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심혜정	2009. 12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제 목	집 필	발 간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신영임	2009. 11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1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신영임	2009. 8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4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3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2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1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 이성규	2008. 9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언	2008. 8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제 목	집 필	발 간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2007. 7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종	2007. 6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종	2006. 6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7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종	2005. 6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발간일	2014년 4월 10일
발행인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대한인쇄사 (tel 02·2279·7834)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7)

ISBN 978-89-6073-723-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4